

www.humanrights.go.k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일시| 2004년 12월 29일(수)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M011452



국가인권위원회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1. 공청회 진행의 개요

- 일시 : 2004. 12. 29.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 사회자
 - 허일태 교수(형법, 한국형사법학회, 동아대 법학과)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 학 계 : 박선영 교수(헌법, 카톨릭대 법학과), 임상규 교수(형법, 계명대 경찰학부), 정연주 교수(행정법, 동국대 법학과), 권창국 교수(형법, 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 관련기관 : 한국更生보호공단 최용탁 과장
 - 시민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 운영방식
 - 14:00~14:05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 14:05~15:30 주제발제 (주제발제자 3인, 1인당 25분)
 - 15:30~15:35 휴식
 - 15:35~16:35 지정토론 (지정토론자 4인, 1인당 15분)
 - 16:35~17:00 종합토론
 - 17:00 폐회

2. 공청회의 주제

가. 주제발표

- 발제 1.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발제자 : 박선영 교수(헌법, 카톨릭대 법학과)

- 발제 2.
 -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발제자 : 임상규 교수(형법, 계명대 경찰학부)

- 발제 3.
 -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발제자 :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나. 지정토론

- 지정토론 1.
 - 현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지정토론자 : 정연주 교수(행정법, 동국대 법학과)

- 지정토론 2.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에 있어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미국의 Megan’s Law 및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지정토론자 : 권창국 교수(형법, 서남대 경찰행정학과)

- 지정토론 3.
 -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 지정토론자 :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 지정토론 4.
 - 성범죄자의 갱생 및 재사회화의 필요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 지정토론자 : 최용탁 과장(한국갱생보호공단)

목 차

주제발표

-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朴 宣 映 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31
임 상 규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
-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53
이 미 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정토론

- 지정토론 1 **현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61
정 연 주 교수 (동국대 법대)
-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77
권 창 국 교수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107
이 수 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137
최 용 탁 과장 (한국갱생보호공단)

부 록

-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4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155
- 신구조문대비표 161

주제 발표

-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朴 宣 映 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임 상 규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
-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이 미 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朴 宣 映 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朴 宣 映 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I.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합헌결정 그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속칭 원조교제)와 성폭력,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행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다음 해 8월부터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해 2004. 12. 22.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580명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원조교제 등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성풍속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제정당시부터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았으며,¹⁾ 이와 같은 논란은 결국 위헌논쟁을 야기하였다.²⁾

1) 예컨대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46호, 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경제, ‘청소년의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토지공법연구 제16지 제2호, 2002, 133-161쪽;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 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제65호, 2002, 한국법학원, 24-49쪽;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고찰, 저스티스 제65호, 2002, 5-23쪽 등.

2) 2001. 7. 23. 전화방을 통해 만난 13세 소녀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의 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신상공개 통지를 받은 한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정도 파탄위기에 처하는 등 응분의 죄값을 치른 상황에서 신상까지 공개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3. 결정 2001구28240). 그 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위 신상공개 대상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범죄방지계도)가 ‘평등권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시한 신상공개제도는 형량과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뒤 범죄자의 성명과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예방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만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 6. 26.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적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는 등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위헌의견이 다수인 5명을 차지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미달(6인)로 합헌판단을 받았다.³⁾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었는바,⁴⁾ 논란의 핵심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요건과 내용, 방법 등이 피해의 최소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헌법 제 75조)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 실정헌법에도 어긋나고, 성매수자의 사생활권과 인격권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기존의 ‘전국적이고도 추상적인 신상공개제도보다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적이고도 구체적인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방법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감시제도를 도입하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선도·교육대책을 수립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

2002. 7. 19. 결정 2002아15).

3) 헌재결 2003. 6. 26. 2002헌가14.

4) 강태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판례연구(4), 헌법재판소, 2003, 67-90쪽; 김상겸,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3, 175-203쪽; 문재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제9권 제2호, 2003, 343-369쪽; 拙稿,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3 등.

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⁵⁾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신상공개 및 처벌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성범죄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난 2004. 10. 4.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⁶⁾

본고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하 '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고찰해본 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개정안검토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형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을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구체화하였다(안 제1조).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성폭력으로부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가 바로 착취행위요, 학대행위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非接觸 성적 행위를 신설한 것도 정당성을 갖는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만지게 하거나) 노출하는(노출하게 하는) 행위(제2조 제2호)도 논리필연적으로 착취와 학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만이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가 아님은 異論이 없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입증되고 있고,⁷⁾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에도 이

5) 문재완, 주4)의 논문, 369쪽; 拙稿, 주4)의 논문, 167-168쪽.

6) 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4-34호.

7) 일본의 이동매춘·아동포르노에관계되는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

미 그러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의 제2호 가운데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라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조항은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이라고 하여 문법상 그 주어와 수식어의 구분에 문제가 있어 그동안 위헌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⁸⁾ 그러한 法文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됨으로써 자연 치유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文面의 해석상으로는 청소년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노출하게 하거나 노출하면 동조항에 위반되도록 되어 있어 그 위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생식기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라고 하여 ‘신체’ 대신에 ‘생식기 등’이라는 특정부위를 예시하고, 행위의 형태도 ‘노골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행위를 무리하게 범죄구성요건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는 ‘가학적·피학적 성행위 또는 수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바람직한 성문화확립이라는 목적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⁹⁾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는 원치 않는 신체부위의 노출은 물론, 일반적인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도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수간이나 가학적·피학적 성행위의 직·간접적 경험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2)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식에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을 포함하여 규제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 개념을 명확히 한 것(제2조 제3호)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카메라(속칭 폰카)의 대중화·일상화 등으로 인해 사진파일이나 이미지파일을 통한 인격권침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형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외에 ‘기타 성적

2조.

8) 헌재결 2002. 4. 25. 2001헌가27.

9) 이러한 입법례는 비교법적으로도 발견되는데, 미국의 아동포르노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간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안 제2조 제3호)을 포함한 것은 그 내용의 불명확성과 애매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다시 말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노출행위 외에 또다시 '기타 성적 행위'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의 '성행위' 외에도 성과 관련된,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음란물이 아닌 것도 모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음란물만이 아니라 희화화된 성적 표현행위나 저속한 성표현물, 또는 의학적·과학적·예술적 또는 교육적 표현물들도 모두 이에 저촉될 수 있으며, 결국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¹⁰⁾ 청소년보호가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필요이상으로 제한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2. 사회의 책임

안 제4조의 2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정비와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文面上으로 볼 때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조문의 제목이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청소년의 보호의무를 국가가 아닌 국민의 의무로 법규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을 요한다.

국가의 의무와 존립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범죄행위가 날로 늘어나면서 전국민이 잠재적인 범죄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主客이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실현방법과 강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체계정합성에 어긋난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무란 납세의 의무(헌법 제38조),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환경보존의 의무(헌법 제35조)와 같이 국가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안(compelling interest)에 대하여 국민

10) 영화 춘향전 등을 상기해보면 문제점은 명확해진다.

에게 최소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은 ...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法文으로 ‘사회환경정비와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물론 동 조항의 신설취지가 청소년보호라고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원칙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이란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더욱이 책임과 의무 조항은 엄격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입법이지, 도덕적·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헌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해야 할 적극적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3. 영리목적의 배제

안 제8조 제2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형벌규정¹¹⁾에서 ‘영리목적’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동법이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괴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19세 미만이고, 현행 민법상으로 가능한 혼인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인바, 위의 II. 1. (2)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음란물도 아닌,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성표현물도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리목적까지 배제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조항인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교육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작되는 일반적인 성표현물은 물론 영리목적 없이 사적으로 제작되는 표현물까지 모두 제한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청소년이용음란물만 제한하는 입법이라면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인 ‘음란물’이기 때문에 영

11) 현행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를 삭제하였다.

리목적이 배제된 표현물의 제작도 금지될 수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음란물이 아닌 교육적·의학적·예술적 표현물 외에도 다소 저속한 일반 성표현물까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비친고죄화

(1) 비친고죄화의 장단점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그동안 친고죄여부가 논란을 야기해왔다. 즉, 동법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여성계를 비롯한 규제강화론자들은 이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들 행위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을 중시하는 학계와 법원 등에서는 친고죄로 해석된다고 보았다.¹²⁾ 다시 말해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에서는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해 모두 친고죄규정(제15조)을 두고 있는데 비해 동법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여성계 등에서는 동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동법의 입법목적이 친고죄로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데 반해, 많은 학자들과 판례는 동법의 목적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상관없이 조사를 하게 하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요컨대 이들 행위를 친고죄로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논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행위가 친고죄로 규정되면 첫째, 피해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사실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둘째, 그 과정에서 가해자측과 경제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조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넷째,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모든 절차가 개시되지 않게 되어 상

12) 대판 2001. 6. 15. 2001도1017; 2001. 5. 15. 2001도1391.

처치유와 사생활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비친고죄로 규정하면 가해자에게는 위화감을 주어 외형상 범죄억제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수법이 더욱 잔인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제적 보호에도 효과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와 수사·재판 등이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을 계속 상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오히려 범죄행위로 인한 상처의 내적·외적치유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결국 피해자 개인의 법익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근절이라고 하는 사회적 법익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살피건대, 성범죄는 다른 범죄행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워 그 파급효과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법익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위의 범죄행위들을 비친고죄로 규정했을 때 예상되는 신원노출 등의 해악은 일생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남게 되어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사회적 가해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이들 범죄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할 경우 청소년 피해자의 인권은 더욱 유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혈연관계와 학연, 지연 등의 인간관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작용하는 나라에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의 직·간접적인 유포는 사회적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 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유교적 잔재사회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배가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서구 선진사회의 입법례가 곧바로 우리 사회에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상술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대상성범죄의 신고의무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개정안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태도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불고지죄의 피해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청소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의 종사자, 또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책임자와 관련종사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보호·감독·교육·관리하는 자에게 성범죄피해사실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 피해자보호 및 권리보장, 선도·교육에 최선을 다 할 것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청소년성보호센터에 위탁을 의뢰하거나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의무를 규정하는 선에서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소년부송치와 수강명령 등

(1) 가해청소년의 소년부송치

개정안은 가해청소년의 처리문제를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하고(안 제10조의 2),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특별법 제5조 내지 제10조 상의 죄와 그 미수범, 형법 제305조 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하여 당해 청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촉범소년¹³⁾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기관에 대한 소년부송치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소년부판사도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0조의 2).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강제처분권한을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현격히 낮아지면서¹⁴⁾ 그 범행양태도 계획적·폭력적·집단

13)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생략
14) 아동에 대한 성폭력가해자의 연령은 현재 11세 이하로까지 내려가고 있는바, 연령대별 가해자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 11세 이하가 전체의 14.5%, 12-13세 12.2%, 14-19세

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이들의 성폭행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서 온 여론악화와 사회적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범법자를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호하여 그의 개선과 갱생을 도와주는 보호처분¹⁵⁾이 범죄발생억제효과도 크고 국가예산도 절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강제송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처리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가정과 보호자·법정대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아무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정과 부모,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며, 개별사건의 처리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 수사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수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해 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해 청소년의性情과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참작사유 외에도 가해 청소년의 부모와 법정대리인의 의견 및 그 가정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사회적 요청에도 부응하고, 타인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가정의 고유성과 고결성·자율성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수사관련 책임자의 재량과 권한도 보장해주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1989년 도입당시에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보호처분이 1997년부터는 성인범죄에까지 확대되면서 보호관찰관의 부족과 예산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들을 받아서 봉사하고 수감하게 할 수 있는 협력기관이나 시설·예산·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내용도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이제는 교정교육(remedial education)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25%를 차지하고 성인가해자는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량, “아동 성폭력 실태와 문제점 -상담소 사례를 중심으로-, 2002 내일청소년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청소년가해자의 실태, 2002. 4. 23. 발표문.

15) 보호처분은 그 근거법에 따라 보호자나 시설 등에 감호위탁하는 방법과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방법,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위탁방법, 소년원에의 (단기)송치방법, 재활센터 등에 선도위탁방법 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감명령 등이 있다.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우선권인정과 보호관찰관의 증원, 청소년문제 전문가의 보호관찰관임용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동개정안의 의미와 효과가 살아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신체적 성숙도가 빨라지고 성문화가 개방되는 동시에 가정해체가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방치내지는 해체된 가정에의 무책임한 위임은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닐 수 없지만, 가정과 수사기관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종종하면서 보호처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숙고가 더 필요할 것이며, 보호처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상청소년의 처리

개정안은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안 제 13조 제1항), 동조 제2항에서는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소년부에 송치하기 위해서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 보호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 상담을 이수하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이와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대상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매수행위를 유도하고, 자신의 연령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과 유인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계획적·조직적 성매수행위를 시도함으로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는 비난과 함께 대상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재발방지 및 선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대상청소년에 대한 온정주의나 소극적인 불개입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선도조치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6)拙著, 법여성학, 법문사, 2003, 245-246쪽, 275-276쪽.

그러나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각 조문의 상충

안 제13조 제1항은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외적 적용없이 모두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놓고, 그 다음 항에서 역시 예외적 적용사유 없이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상 청소년을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자기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의 상충은 입법목적과 개정취지에 따라 조화로운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안 제13조 제1항의 입법태도는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실제로 그동안 대상 청소년 중에는 성을 팔고 난 다음 성인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친구 또는 후배에게 성매매를 교사하는 경우까지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일정한 범위와 요건을 명기한 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소년부 송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5조)는 물론,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6조)·알선영업행위(제7조)·매매행위(제9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제8조) 등(이하 ‘제5조 내지 제9조의 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의 대상청소년 모두에게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지 제5조 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만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단순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 이들 행위의 대상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선도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연령의 청소년들은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강요행위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제작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대상청소년들을 처벌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판단력배양과 올바른 성교육·선도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수강명령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수강명령 등을 통한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멘토링 등을 통한 정신적 치료와 새로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은 일반 성인에 대한 형벌과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대상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 중 상당수는 가출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아 구조적·심리적 상처를 입었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어른들의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어 생존의 수단으로 성매매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 대상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과 선도의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보호자통지제도의 도입

개정안은 제5조 내지 제9조의 대상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안 제13조 제3항).

이와 같은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1차적인 교육과 책임의 소재가 가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미 가출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할 부모와 가정 또한 해체되어 있거나 해체상태에 직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자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대상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성매매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과 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들도 받았을 심적 충격에 의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변화와 정상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집단가정(group home)이나 대리가정(foster home), 또는 멘토링(mentoring)제도를 청소년성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¹⁷⁾ 이들 성매매청소년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나 지도·감독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의 청소년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3) 수강명령 등

개정안은 가해청소년과 성인 가해자의 경우 모두 수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즉 소년부 판사는 이들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청소년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법 제32조¹⁹⁾에 의한 보호처분을 하는 동시에,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들 보호관찰이 결정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의 2 제2항, 제15조), 일반 성인 가해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 3).

살피건대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의 청소년관련법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의무로서의 형벌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준수사항(Weisungen)으로서의 완화된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서 교육적 처분(Erziehungsmäßregeln)으로서의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장이 세계적인 흐름임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과 수강명령 등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회봉사명령은

17) 전영실,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2002. 9., 28-33쪽.

18) 신상공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가 별도로 권고된다(안 제20조 제5항).

19)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여가시간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자원봉사와는 달리 형벌적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경우 구금으로 인해 생성되는 범죄학습 효과나 새로운 비행집단의 형성,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는 의식을 형성시킬 수도 있으며, 자신의 노동을 통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또 수강명령도 범죄자들에게 짧고 강한 충격(short & sharp shock)의 요법으로 수강센터에 출석하여 200시간 이내의 강의와 훈련 또는 상담을 받는 것이 성범죄자에게는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²⁰⁾

다만 II. 5. (1)에서 上述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만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²¹⁾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자가 자신들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을 갖고 이를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다른 범죄와는 차별적으로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자아존중감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인 매수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의 비행은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학대경험과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의 문제적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여성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을 바탕으로 소녀로서의 경험과 여성발달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특별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하고, 청소년문제를 전공한 여성보호관찰관의 도입방안이 현실성있게 논의되어야 한다.²²⁾

20) 拙著, 주)의 책, 275-276쪽.

21) 拙著, 주)의 책, 265-266쪽.

22) 자세한 논의는 Jeffrey Fagan & Franklin E. Zimeing, The Changing Borders of Juvenile Justice, Transfer of Adolescents to the Criminal Cour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참조.

6.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에 대상청소년을 위탁처분하는 현행법 체계대신 청소년성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가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 기타 성폭력피해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선도교육과 교육·상담·치료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6-17조). 이는 아직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와 제17조를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청소년성보호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시설이나 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계하여 활성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기대된다. 다만 기존의 민간단체들의 전문성이나 시설의 요건이 차별화되어 있고, 운영목적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이들 민간단체와 연계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모색과 시행령의 제정이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7. 신상세부정보의 공개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세부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안 제20조의 2). 현재 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외에도, 개정안은 기존의 공개대상범죄를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살인·강간치사 포함)과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자로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상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 세부정보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정보가 제공되는 기간동안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5년간 제공되는 정보는 본

인이 거주하는 시·군·구까지 열람이 가능하지만, 등사나 복사 및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입법은 그동안 신상공개제도가 실효성은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 끝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바, 개정안 제20조의 2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위배

신상공개정보의 등록·제공·열람·자료관리·송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절차·방법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개정안 제20조의 2 제8항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현재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전혀 근거조항이 없이²³⁾ 그 시행령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예규에 의거해 존재하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제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논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

개정안은 세부정보공개 대상자를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범죄로 인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금고형은 기본적으로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적 확산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죄에 대해 과하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비난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자에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자에게 5년 동안 사진까지 공개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

2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예규로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법 동조 동항은 단지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볼 때 개정안이 기존의 추상적·전국적·일반적 신상 공개에서 벗어나 구체적·지역적 공개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피해의 최소화(less restrictive alternative)과 법익의 균형성(balancing test)에는 여전히 위배된다.

둘째, 청소년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해서는 아니 될 것인바, 금고이상의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로 하는 것은 개전의 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가운데 치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험한 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에 한정하는 동시에 범죄의 죄질과 횡수, 누우침 등에 따라 그 공개기간과 방법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메간법의 효시가 된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범죄의 형태와 죄질에 따라 소극적인 정보제공(passive release of information)과 적극적인 신상공개(active notification)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²⁴⁾

(3) 평등권의 위배

우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평등권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임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며, 실질적 평등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함도 再論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보면, 안 제20조의 2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년 동안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동일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 참작 사유가 다를 수 있는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누구나 동일하게 5년 동안 사진까지 포함된 세부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동일범죄의 여부나 누범의 횡수, 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 개별적 타당성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비난 가능성이 더 많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연한을 더 길게 한다든지, 공개방법을 더 다양하게 하는 등의 차별적인

24) N. Y. Correct. Law §168(Mickinney 1996); Mass. Gen. Laws ch. 6 §1787.

방법을 도입하지 아니한 채 모든 금고 2회 이상의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공개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한, 인권침해의 요소는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청소년성보호법이 그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저위험범죄자와 고위험범죄자를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⁵⁾

(4) 재판받을 권리침해와 적법절차의 원칙위배

신상공개제도가 실질적인 형벌이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와 그 요건·방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 법문화에서는 형벌이라고 보아야 한다.²⁶⁾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예규로서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년 동안 세부신상을 공개하는 개정안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게다가 신상공개대상자에게 전혀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입법내용은 적법절차에도 위배된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세부신상공개 이전에 자기방어권과 의견진술의 기회는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詳述한다.

(5) 신상공개심의제도의 문제점

1) 구성

세부신상까지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공개를 위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현재의 신상공개사전심의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고, 설사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25) 拙著, 주)의 책, 273-274쪽.

26) 우리의 독특한 사회문화관점에서 볼 때 신상공개를 당하는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은 신상공개로 인해 당하는 수치심의 유발(shaming punishment)내지는 명예의 실추(stigma)는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형벌의 정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중처벌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拙稿, 주1)의 논문, 152-154쪽.

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예규로 구성되는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청소년 성보호업무를 담당하거나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위원구성 방법은 원천적·일방적으로 신상공개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주업무가 신상공개라고 하는 일종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업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학자나 변호사의 참여는 없이, 단지 극히 추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그것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거나 청소년성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개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같은 이유에서 여성부·대검찰청·경찰청·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청소년보호위원장이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를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운영규정 제3조 제4항)도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적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학자 등이 참여하여야 하며, 보다 바람직하기는 현직 법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비록 법정에서 재판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9인의 위원 가운데 3인 이상을 법관이 차지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권을 받을 권리침해라는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직 법관의 참여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바람직하기는 현재처럼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의 위원회가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2) 신상공개심의기준의 배점

위원회는 신상공개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한 결과 필요적 합산항목(100점)과 기타고려항목(총득점의 10% 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하배점인 기본점수가 43점에 달해 심의대상자에게 주어질 여유는 17점에 불과하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심의대상자들이 신

상공개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들의 심의권과 재량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성도 높다. 또 심의기준의 기본배점이 이렇게 높다보니 일반국민이 생각할 때 중대한 법익침해자 또는 중한 위반자에 대해서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하는 인식과는 달리 예외적인 경미한 위반자만 제외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고 심의기준으로서의 변별력을 상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배점은 적극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신상공개심의기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시기준의 배점에는 심의대상자가 재판과정에서 양형참작사유로 이미 심사를 받고 형량이 정해진 요건들이다. 다시 말해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양형참작사유(형법 제51조)로서 형량에 반영되어 있는데, 대동소이한 기준으로 다시 신상공개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범죄유형에 1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에 5점,²⁸⁾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에 5점, 범행전력에 10점 등을 추가로 배정한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따라서 형집행 후에 이루어질 세부신상공개에 따른 심사시에는 재판결과 선고받은 형량(집행유예와 자유형의 형량 등에 따른 차별화)과 인정된 범죄(강간, 강도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강제추행 등), 대상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점수배점을 기본적으로 고정화하되, 그밖에 수감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이수명령의 이수정

27) 현재의 신상공개심의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형 량 (40점)	형량에 따라 15점부터 40점까지 부여
범 죄 유 형(20점)	범죄유형에 따라 8점부터 20점까지 부여
대상 청소년의 연령(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15점부터 20점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10점)	5점부터 10점까지 부여
범 행 전 력	10점 범위 내 부여
기타 고려 사항	총 득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

28) 대상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점수부여는 보다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유아에 대한 성범죄와 고등학생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성숙도를 지닌 연령대에 달한 자에 대한 성범죄의 점수가 겨우 5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도 정당성도 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점수대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 및 이행정도,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의 정도, 향후 생활계획, 性認知度 등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한 사유로 거듭 심사를 받는 것은 우리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형참작사유 외에 청소년대상의 성범죄에 걸맞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8. 청소년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개정안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1조).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에서 10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 후 5년 동안 유치원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부터 초·중등학교의 시설 또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내지 취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은 그동안 청소년대상의 성범죄가 많은 경우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취업을 하거나 이들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청소년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들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단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성범죄자들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미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의 세부사항까지 공개되

는 등 응분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성의 정도에 따른 구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차단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위배

개정안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중인 자 내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이러한 입법내용은 ‘청소년보호’라고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시법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오래 전에 또는 자신도 청소년이었을 당시에 범죄행위를 한 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자에게 단지 과거의 경력만을 문제 삼아 현재 아무런 이상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자에게 새로운 직장에서의 취업금지도 아닌, 바로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만이 아니라, 행위시 법률원칙이라고 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앞으로 취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명시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과거의 범죄경력을 문제삼아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3) 알권리의 보장

개정안 제 21조 제2항과 제3항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현재 또는 장래에 취업할 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 조항에 당사자에게 이러한 범죄사실의 여부가 조회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통보해 줄 의무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범죄사실조회가 이루어

지고, 또 만의 하나 잘못된 정보의 유입으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취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그러한 범죄사실의 조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고지해 주는 명문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현대 법치국가, 민주사회에서는 입법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도 투명하고 정당해야 함은 異論을 요하지 아니한다.

Ⅲ. 청소년보호와 법치주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청소년의 성매수 행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행위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성장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견해에 따라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해 세부신상공개가 현행 제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제도가 범죄자의 범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형벌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법관만이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예규로 구성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에서 그 공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공개기준과 방법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별도로 독립기구화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더 확실하게는 형법전에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불필

요한 위헌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호처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청소년과 성인, 대상청소년을 모두 보호처분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이며, 대상청소년은 물론 그들 가족 구성원이나 보호자, 법정대리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대책, 교육과 선도방법 등 치유책이 미비한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게다가 개정안은 입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는바, 가해 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처리문제(제10조의 2, 제13조), 이와 관련된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 수강명령이 각각 분리 또는 혼재되어 있어(제14조, 제15조) 입법체계상 대단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강명령도 그 대상자에 따라 각 조문에 분산되어 있는바(10조의 3, 제14조, 제15조 등), 이들 조문에 대해서도 입법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조문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끝)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임상규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임 상 규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

I. 머리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파격적 조치와 더불어 강간범죄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6,982건과 6,911건이었지만, 2002년에는 36.5%가 증가한 9,435건이었고, 그 이듬해에는 9.8%가 증가한 10,365건으로 파악되었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 사이에 강간범죄가 약 50% 가량 증가한 셈이다.¹⁾ 물론, 이러한 수치변화가 전적으로 현행 공개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02년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무엇보다도 신상공개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라는 충격파가 피해자들의 신고정신을 자극했거나 수사기관의 보다 엄정한 대처의지를 촉발함으로써 암수범죄로 남을 수도 있었을 강간사범들을 공식 통계 속으로 잡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상공개는 우리 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불러오기도 하였지만, 그 파장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공식통계에 따르면이라도 이미 2003년도에는 강간 고소율의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강간피해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싸늘한 분위기가 그다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공개제도가 이러한 분위기의 반전을 직접 의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의식과 문화를 개혁하자던 애초의 취지²⁾가 다소 무색해 보이기도 한다. 사실,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이미

1)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3), 2면 이하.

2)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37면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통권 제65호(2002/2), 29면.

사라졌고, 그와 함께 적어도 4차 이후의 신상공개는 하나의 의례적인 형식절차로 전락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는 애초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의식과 문화는 그리 쉽게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신상공개 시행주체인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일찍이 제도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여 왔고, 금년 초에는 이른바 ‘저위험군’을 따로 분류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⁴⁾ 하지만 이를 단순히 하나의 은전이나 혜택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 교육과정의 이수지시는 수강명령이라는 보안처분과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부담처분이고,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아무나 임의로 시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두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저위험군에 대한 교육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고위험군’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의 세부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함께 담고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경우에는 얼굴사진과 더불어 세부주소도 자세히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상자는 자신의 세부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또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의무의 위반은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고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직업선택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의 취업을 5년 동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 대한 조치가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예외가 원칙을 몰아낸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예외를 요구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성과 국민들의 지지를 앞세우고 있다.⁵⁾ 현행 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일그러진 고민⁶⁾은 ‘합헌결정 보고회’⁷⁾

3) 이에 대해서는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380면 참조.

4) <http://www.youth.go.kr/Public/Firstline5.asp>.

5)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85.5%가 얼굴공개에 찬성하고, 78.6%가 세부주소의 공개에 찬성한다고 하며, 심지어 82.4%의 국민들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지지한다고 한다. 이영란,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8), 69, 75, 175면.

6) 현재 2003.6.26, 2002헌가14. 신상공개가 합헌으로 선언되었지만, 위헌의견이 5:4로 우세하였다.

라는 축제분위기에 묻혀버렸고, 이제는 이른바 ‘땀봉괴’의 조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과도한 역할과 개입을 제한하려던 근대이성법의 지혜들이 갖가지 윤리적·정치적 혹은 정책적 요구들에 의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II.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논리적 문제점

1. ‘성범죄와의 전쟁’수준의 강성형사정책

먼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혹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 빗대어 심지어 공식처벌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⁸⁾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되었고, 처벌의 효과나 필요성이 전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왜 혹은 무엇을 위하여 처벌하느냐”는 형사법의 근본문제가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형벌의 존재론적 기반이라는 의사자유는 오랜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없고,⁹⁾ 보안처분을 위한 예방적 전망은 대단히 불확실하다.¹⁰⁾ 이러한 흔들리는 정당성은 형사제재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사제재의 보충성이나 최후수단성(ultima ratio)을 강조하던 근대이성법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¹¹⁾

다만, 우리사회는 근대이성법의 지혜를 체득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해방이전에는 형사제재가 당대의 지배윤리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최고수단(prima ratio)으로 여겨졌고, 그 이후에는 점차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sola ratio)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이 초래한 사회의 복잡성과 위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 보고회, 2003.7.15,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8) 이성식, 공식처벌의 간접손실효과,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1998), 225면.

9) U. Pothast, Die Unzulänglichkeit der Freiheitsbeweise, 1987, S.9ff., 315ff.

10) 배종대, 형사정책(제5전정판), 306면 이하, 421면 참조.

11) 실제로, 처벌의 보충성이나 최후수단성은 모든 형법교과서의 첫머리에 언급되고 있는 형법의 지도이념이다. 대표적으로 오영근, 형법총론, 13면;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 157면 이하 참조.

협성을 감축하고자 그 무엇보다 먼저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이고, 한강에서 수영해도 범죄이다.¹²⁾ 심지어 坪이나 斤이라는 단위를 언급하는 행위들이나 부모에 대한 불효도 범죄로 규정하려고 하였다.¹³⁾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며 보다 강한’ 처벌이라는 분위기에 터잡아 형법이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¹⁴⁾

따라서 가령,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아니한다.¹⁵⁾ 물론, 그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배려’라는 수궁할 만한 논리가 숨겨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성문제에 관한 윤리적인 요구와 뒤엉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바로 성희롱에 관한 법규정이다. 성희롱의 외연을 파악할 수 없도록 아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성희롱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다는 과격이 통용되기도 한다.¹⁶⁾ 하지만 이 모호성은 수많은 직장인들을 예방교육이라는 강제로 몰아넣고, 그들의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예리한 칼날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예컨대, 친구가 망을 보는 사이에 강간하거나 성경험이 없는 처녀를 강간한 자는 살인의 경우에 버금가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성폭력방지특별법 제6조 제1항), 후자가 3년 내에 다시 처녀를 강간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강법 제2, 3조). 또한 필통 속의 칼을 꺼내 흔들며 여대생의 핸드백을 강탈하려다가 강간으로 나아가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3년 내에 다시 일어나면 최소한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들의 경우에는 중

1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13) 坪을 m²로, 그리고 斤을 kg으로 통일하고자 산업자원부는 坪과 斤을 사용하는 자들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 하였고, 금년에는 한나라당이 추진한 효도 특별법을 계기로 불효죄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2004.7.2, 정치/사회면.

14) 이에 대해서는 이상돈, 형법학(1999), 9면 이하 참조.

15) 윤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잉성에 대한 지적으로는 오영근, 형법총론, 14면.

16)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대학내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모델을 제시한 한 연구에서는 성희롱을 아예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희롱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피신고인의 의사보다는 신고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장승욱,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2003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10, 14면.

거인멸의 차원에서 차라리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아마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처벌의 강화는 엉뚱한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고,¹⁷⁾ 또 우리가 가진 수단을 소진시켜 버리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범죄자를 두 번 사형시킬 수는 없고, 또 자유형을 가중하더라도 25년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¹⁸⁾ 그럼에도 일정한 필요성을 앞세우는 윤리적 요구들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나 손가락질에 편승하여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¹⁹⁾ 언론은 그 불안감을 확대·재생산하며,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은 특별법으로 화답한다. 반면에 그 강화된 처벌의 현실적 효과 내지는 의도했던 목적의 달성여부는 그리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그저 “꼭 필요하다”고 되뇌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내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조사·발표할 뿐이다.²⁰⁾

이러한 허망한 상징성을 쫓는 특별입법의 행진은 형법전을 고사시켰다. 이는 성관련범죄에 관한 한 더 이상 일반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적용영역이 극히 제한된 아주 특별한 법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청소년성보호법이다. 예컨대, 혼인을 빙자하여 18세의 소녀와 동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형법 제30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드라마틱하게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한다.²¹⁾ 물론, 이러한 행위는 신상공개의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그 변경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신상공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하거나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는 조치들

17) 이른바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상돈, 법학입문(1998), 115면 이하, 139면 참조.

18) 배종대, 형법개정의 기본방향(2004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초발표문), 10면.

19) 심지어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의 나이를 17세 미만으로 끌어 올리고,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아예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심영희, 청소년 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 24면.

20) 이영란, 전계보고서, 18면 이하.

21) 다만,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가령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소년과 간음하더라도 그 거짓말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01.12.24, 2001도5074).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의 적용을 피하고자 위계의 개념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해석이 옳지만, 이는 곧 준강간에 이르지 않는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오영근, 형법각론, 222면). 따라서 입법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위계도 同法 제10조 제4항이 말하는 위계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진은 이제 어디에선가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처벌의 보충성이나 최후 수단성을 축으로 하는 형법의 법치국가성을 되살려야 한다. 삼청교육대와 같은 극단적인 범죄투쟁적 구상이나 뉴욕의 경찰이 시행했던 이른바 Zero Tolerance²²⁾와 같은 강성형사정책이 초래한 사회의 부정적 가치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실의 여건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윤리적 순수함을 위하여 ‘보다 강한’ 처벌만을 부르짖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형사처벌이 보여주듯이 그 처벌은 사회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은폐시키고, 단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허망한 상징성만 쫓을 위험성도 없지 않다.²³⁾

2. 교육과정의 이수권고와 취업의 제한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초부터 신상공개와 처벌적 색채가 아니라, 이른바 ‘영계문화’와 같은 왜곡된 성문화 내지는 그릇된 국민의식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청의 특별조치적 성격을 강조하여 왔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결과적으로 추인한 셈이다. 따라서 현행 신상공개와 수정방안들, 즉 교육과정의 이수권고와 얼굴공개 및 취업의 제한 등도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성격은 추후에 다시 논의되겠지만, 먼저 그 이면에는 ‘성범죄와의 예방적 투쟁’이라는 강성형사정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정안이 위에 언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교육과정의 이수권고와 취업제한이라는 조치는 현행 신상공개와 대체수단이 아니라, 그 공개에 덧붙여진 추가부담으로 고안되어 있다. 게다가 그 대상자는 신상이 공개될 자들이 아니라, 신상공개와 심사대상자로 확대되어 있다. 즉, 개정안 제20조 제2항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정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고(제5항), 또한 그들의 취업을 확정판결 후 5년 동안 확

22) 장석현, 무관용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제4호(2002), 21면 이하 참조.

23) 이상돈, 법학입문(1998), 118면 ; 이상돈, 형법학(1999), 53면 이하.

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제21조). 물론, 교육이수는 임의적 조치이지만, 현행법상의 임의적 신상공개처럼 아마도 필요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클 것이다. 확실적인 취업제한이 보여주듯이 ‘성범죄자는 특히 고약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이미 폭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안 제20조 제6항은 ‘교육과정의 이수권고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교육의 이수권고가 그야말로 하나의 권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6차 공개와 같이 그 권고의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고, 아울러 권고이행을 조건으로 신상공개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동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이수는 신상공개의 대체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 제20조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규정이라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을 통해서도 재삼 확인된 바이다.²⁴⁾ 그럼에도 이 다수의견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헌적인 위임입법을 다시 한번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아마도 하나의 고집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전제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위험인물이 선정되어야 하지만, 이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교육을 받으면 뭔가 개선될 것이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거나 혹은 “공개가 싫으면 교육을 받아라”는 위하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이수를 지시한다면, 이는 아마도 또 하나의 형식적인 부담부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과추측이나 위하논리에 입각한 부담처분은 교육이수의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즉, 그 교육은 신상이 공개될 자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애초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자들에 대한 부담으로도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이미 취업제한규정에 현실화되어 있다. 즉, 개정안 제21조는 제20조 제2항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한다. 게다가 5년이라는 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따라서 취업제한은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강력범에게는 거의 무의미하고, 집행유예나 벌금처럼 형벌이 경미할수록 보다 가혹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전도된 효과는 개정안이 대상자의 실제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된 혹은 허구적인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

24) 헌재 2003.6.26, 2002헌가14.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집(2003), 659면 이하.

사한다. 즉, “성범죄자들은 죄다 고약하고 위험하다”라는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 계산법의 숨겨진 위력은 취업제한의 기산점을 한번 바꾸어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령, 강력범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취업제한의 기산점은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회복귀시의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의 기간을 양정하거나 혹은 아예 획일적으로 3년이나 5년을 제한하는 방안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다만, 전자는 위험성판단의 불확실성이나 판단주체의 구성문제와 같은 실무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후자는 사회적 가치의 충돌을 초래한다. 즉, 획일적인 취업제한의 필요성은 판사의 양형과 그에 따른 교정노력의 불충분성을 시사하고, 반대로 양형의 정당성은 취업제한의 과잉성을 드러내게 된다.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고자 취업제한의 전도된 효과를 기꺼이 감수하고, 그와 함께 “어쨌든 필요하다”는 이면전략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3. 얼굴사진과 주소의 공개 및 그 흔들리는 지향점

물론, 취업제한의 기산점이 갖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세부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개정안 제20조의2는 다소 서두른 입안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同규정은 세부공개 대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력방지특별법 제12조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同法 제14조의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범까지 끌어넣고 말았다. 기수범은 제외하고, 미수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개시점과 관련해서도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라는 아리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0년형을 받은 자가 1년 정도 복역하면, 그의 세부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개될 정보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은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변동사유가 발생하고 1개월 이후에 그 변동이 현실

25) 현재, 2003.6.26, 2003헌가14 결정에서도 현행 공개제도가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집(2003), 652면.

화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은 표현이다. 또 제20조의3 제2항은 공개된 정보를 ‘등사, 복사 및 반출, 배포하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등사 또는 복사’ 내지는 ‘등사 그리고 복사’ 중에서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고, 이는 반출과 배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정이 가능한 작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요건을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허술함이 바로 개정안의 무모함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범문의 불명확성은 세부정보의 취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든다. 물론, 미국의 메건법이 자주 소개되었고,²⁶⁾ 또 이 법의 취지처럼 바로 성범죄자들의 이웃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²⁷⁾ 사실, 개정안 제20조의2는 바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범죄양상이 판이한 나라의 예외적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²⁸⁾ 게다가 미국과 우리는 사회적 여건 내지 분위기도 판이하다. 가령, 미국은 실용적인 목적합리성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명목적 가치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체면중시의 사회이다.

물론, 개정안 제20조의2는 고유한 특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령, 공개대상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고(제1항), 공개내용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및 범죄사실의 요지이며(제2항), 공개기간은 5년이다(제5항). 대상자는 제2항의 정보 및 그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제3항), 이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제20조의3 제1항), 이 범죄자의 세부정보는 사진을 제외한 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제7항). 그리고 공개정보의 열람은 시·군·구의 범위까지 가능하며, 공개자료의 복사 및 반출은 금지된다

26) 이영란, 전계논문(2001), 31면 ;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정책학회, 2001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12면 이하 ; <http://www.youth.go.kr/Public/Firstline5.asp>.

27) 최원기, 신상공개제도의 현실적 효과와 보완적 방향성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14면 ;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 49면 이하.

28) 공식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살인범은 우리의 16배, 강도는 96배, 그리고 강간은 약 13배에 이른다. 인구비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살인은 우리의 약 3배, 강도는 18배, 그리고 강간은 2.5배에 이른다. 그리고 메건법의 성격과 그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내린 합헌결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2003.6.26, 2002헌가14,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집(2003), 654면 이하 참조.

(제4항). 이 열람과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지만, 이 위임은 년2회 이상의 의무공개로 이어진다(제6항).

정보등록의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아울러 사진을 제외한 세부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구상은 무엇보다도 등록정보의 열람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람자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열람범위가 시·군·구까지로 확장되어 있다. 이를 ‘分區된 市는 區까지’로 이해하더라도 그 범위는 ‘범죄자의 이웃주민’을 넘어선다. 게다가 공개자료의 복사나 반출을 금지하는 것도 이웃주민의 자구책을 방해할 것이다. 물론, 공개정보의 무단유출과 그 폐해를 염려했지만, 이를 처벌하는 금지규정들이 없지도 않다. 그럼에도 가령, 범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의 자료반출까지 금지한 것은 적어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출발기조와 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지향점이 흔들리는 모습은 공개대상자와 공개기간의 확실적인 확정에서도 엿보인다. 즉, 범죄자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자구책마련이 서로 대비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강제추행 이상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아울러 공개시점에서 5년 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혀 수궁하지 못할 구상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습성이나 행동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할 과학적 방법을 알지 못한다.²⁹⁾ 따라서 세부정보의 공개도 실제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2회 이상의 실형’이나 ‘5년의 경과’라는 일정한 형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자구책의 강구필요성도 허구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행위자가 받은 실형은 불법의 중함을 의미하고, 그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징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위책임의 논리에 따른다면,³⁰⁾ ‘반복된 실형’도 원칙적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 위험성이 아니라, ‘실형의 반복’이 암시하는 행위자의 위험한 습성 및 이에 대한 예방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가령, 성매수로 인한 유

29) 임상규, 형사처벌에 대한 범죄학적 언명의 가치와 한계,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2003), 293면 이하 참조.

30) 형법학계의 절대적인 다수설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임상규, 형법상의 책임개념과 책임형의 구체화모델,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7), 540면 이하 ; 임상규, ‘계부살해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재조명, 계명법학 제7집(2003), 17면 이하 참조.

죄판결의 10회 반복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고약하다던 성매수자 등을 배제한 채, ‘강제추행 이상의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받았을 것’을 기준으로 얼굴을 공개한다면, 이러한 형식성은 아마도 관련당사자들의 전략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현행 신상공개의 대체수단으로 교육이수를 지시하더라도 당사자는 차라리 신상공개를 원할지도 모른다. ‘종로구의 홍길동’이라는 현행 공개는 이미 ‘신상을 공개당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의 하위집단을 조성했을 뿐인 종이호랑이로 전략하였고, 얼굴공개는 그 종이호랑이조차 잊혀진 존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얼굴공개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서까지 찾아가 자료를 열람하는 열의도 점차 식어지고, 궁극에는 몇몇 사람들의 관심사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실형을 고민하는 판사는 얼굴공개를 감안하여 아예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¹⁾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는 얼굴공개도 종이호랑이로 전략할 여지가 없지 않다.

III. 개정안의 규범논리적 쟁점과 그 대안

1. 교육과정의 이수와 얼굴공개의 법적 성격

판사의 선택에 따라서는 얼굴공개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얼굴공개를 구상하더라도 그 시행여부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신상공개가 헌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냐의 논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소간 정리되었고, 따라서 얼굴공개와 같은 변화방안을 모색해 볼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위헌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변화를 모색하기 이전에, 현행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조차 보다 자제하고 절제하는 신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다수의 위헌의견이 목도했던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31)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개념을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 2001.12.24, 2001도5074 판결도 이러한 실무적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 가치의 핵심은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課罰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모든 불이익처분이 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언한 바 있다.³²⁾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이 말하는 ‘처벌’이 형법상의 형벌부과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일, 헌법상의 개념들이 모두 법률에 의해 정의된다면, 헌법은 법률에 대한 우위를 상실하고 단순히 입법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며, 결국 법률의 합헌성심사는 헌법의 합법성심사로 전도될 것이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현행 신상공개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그 이중처벌적 성격을 함께 부정하는 것³⁴⁾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게다가 형법 제41조가 형벌의 종류를 배타적·종국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즉, 同 규정은 자신이 언급한 “9가지 수단 외에는 형벌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형벌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陵遲處斬이나 剖棺斬屍와 같은 잔혹형, 棍杖이라는 신체형 및 立庭·立市³⁵⁾와 같은 전통적인 명예형 등의 형벌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형법은 대단히 절제된 범죄응징을 추구하고, 또 그 응징 후에는 범죄자를 다시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여려는 재사회화의 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³⁶⁾

그렇다면, 立庭이나 立市와 같은 전통적인 망신주기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시켜 놓은 현행 신상공개와 개정안의 인터넷공개 및 이들을 능가하는 얼굴공개는 형법상의 형벌로도 편입될 수가 없다. 특히, 판결문에 기재된 시·군·구까지의 주소가 아니라, (변경된) 정확한 세부주소를 담고 있는 개정안의 인터넷공개와 얼굴공개는 아예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속칭 ‘떼법’이 통하는 우리

32) 헌재 1994.6.30, 92헌바38.

33) 강태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고찰(2003년 헌법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 9면.

34) 심희기, 전계논문, 29면 ; 이영란, 전계논문(2001), 36면 ; <http://www.youth.go.kr/Public/Firstline5.asp>.

35) 立庭은 범죄자를 마을 어귀에 세워두는 것이고, 立市는 시장에 서있게 하는 형벌이다. 김기춘, 조선시대형전, 1990, 115면 이하 참조.

36) 김일수, 형법총론, 706면 ; 이재상, 형법총론, 55면 ; 임웅, 형법총론, 48면. 심지어 오영근, 형법총론, 837면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특별예방 뿐이라고 한다.

의 범문화에서는 반사회 등을 통해 취합된 집단적 의견이 당사자의 퇴출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고,³⁷⁾ 이러한 가능성은 형법의 전략과는 너무 상충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 가지 공개방안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³⁸⁾

물론, 이 최후수단이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와 같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간접적인 범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신상공개는 그러한 간접적 사회정책의 발로가 아니며, 오히려 보다 구체적인 형사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범죄를 원인으로 고안된 직접적인 범죄대책’이다. 교육과정의 이수와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범죄의 경중이고, 또 그 이면에 흐르는 예방적 사고는 행위자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보안처분적 구상과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처럼 형벌적 잣대에 따라 보안처분적 속성을 내보이는 부담처분을 지칭하여 바로 형사정책적 차원의 형사제재라고 한다.³⁹⁾

2. 의문스러운 제도의 실효성

신상공개의 방안들은 형사제재의 일종이지만, 실은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현행 헌법과 형법이 허용하지 않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특히, 개정안 제20조의2 제7항이 예정하는 당사자는 성범죄와 등록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그리고 인터넷공개를 통해 삼중으로 처벌받는다. 상습범이나 누범, 특별법상의 가중 및 보호감호의 가능성도 고려하자면, 오중이나 육중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용단폭격이 가해지는 셈이다. 다만, 이는 신상공개를 거부할 결정적인 이의가 되지는 못한다. 이중처벌과 같은 이의도 만고

37) 현재 2003.6.26, 2002헌가14 결정이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사인에 의한 무절제한 보복행위 내지 자경행위(自警行爲)를 조장할 위험’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집(2003), 652면.

38) 임상규,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377면.

39) 한상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57호, 28면 이하; 박기석,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Juris Form 제2호(2002), 충북대 법학연구소, 84면; 권창국, ‘청소년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2001), 219면; 강태수, 전개논문, 7면;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집(2003), 652면.

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⁰⁾ 헌법과 형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필요성은 단순히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또 ‘영계문화’와 같은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지적이 곧 그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이 실효성은 검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지만,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공허한 추측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은 신상공개가 안고 있는 부정적 폐해나 그에 대한 규범논리적 의의들을 불식시키거나 상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신상공개’의 효과검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도 안된다. 적어도 현행법상의 공개제도는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이 점을 자각하고 지난 8월에 신상공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⁴¹⁾ 그러나 이 자료는 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인지도와 효과성에 관한 그들의 추측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였을 뿐이다. 추구된 목적, 가령 왜곡된 성문화나 그릇된 국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연구자료의 불충분성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효과분석은 아예 불가능하고, 이는 이미 제도를 도입할 때에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 즉, 제도의 극약처방적 성격은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효과입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⁴²⁾

이는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암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피해는 약 2% 정도가 신고될 뿐이라고 한다.⁴³⁾ 물론, 이 역시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매수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추측조차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공식통계는 성범죄

40) 이에 반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가중적 법률유보로 이해하고, 따라서 이중처벌의 위헌성을 만회할 다른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는 강태수, 전계논문, 9면 이하.

41) 이영란,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8).

42) 따라서 현행 신상공개는 ‘도덕적 원리주의의 성격을 띠는 비현실적 대안’이라고 비난받기도 하였다. 김동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10면.

43) 지광준, 성범죄, 1998, 47면 ; 심희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의 최소화방안(2003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15면.

의 현실이나 그 변화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실제의 강간범죄에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피해자들의 신고가 1%만 증가하면, 공식통계의 수치는 약 50%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와는 반대로, 소추기관의 느슨한 소추전략이나 단속활동 및 보다 치밀하고 은밀한 범죄수법 등은 공식통계의 수치를 격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의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상공개의 효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⁴⁴⁾

사실, 모든 변인들을 분류·통제하여 신상공개의 효과만을 분석해낼 과학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SPSS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이라는 통계상의 분석기법이 보여주는 사회적 변인들의 우열관계도 충분히 논박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할 뿐이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한 이미 분석자료의 신뢰도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성범죄의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의 싸늘한 분위기로 인한 낮은 신고율은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불성실한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문제이다.⁴⁵⁾ 따라서 현행 신상공개의 효과는 정확히 검증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아마도 이러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초에 현행 신상공개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하였다.⁴⁶⁾ 그리고 이제는 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얼굴공개에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다. 얼굴공개가 매우지 못하는 성범죄의 낮은 처벌가능성이라는 틈새를 뚫고 범죄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공개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제도는 또 하나의 지난 업적으로 덩그러니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얼굴공개라는 파격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너리에 “성범죄는 특별히 고약하다. 그러니 범하지 말라”는 교육적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을 것이다.⁴⁷⁾ 그러나 현행 공개제도가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메시지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도 않고, 또한 이것만을 추구

44) 그럼에도 4차 공개의 심사대상자(1,224명)가 3차(1,244명)보다 20명이 줄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성급한 보도도 없지 않았다. 중앙일보 2002.10.23일자 사회면.

45) 손동권 譯, 압수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1998 여름호), 201, 215면 이하; 이윤호, 범죄학개론, 2002, 34면 이하; 임상규,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2003), 299면 이하.

46)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이 ‘꼭 필요한’이라는 강조표현과 긴 필요이유가 부각되어 있었으나, 합헌결정 후에는 다소 여유를 찾아 그 필요이유를 짧게 언급하고 있다.

47)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신상공개를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위’로 보고 있다. <http://www.youth.go.kr/Public/Firstline5.asp>.

하기에는 개정안의 폐해가 지나칠 것이다.

3. 개정안의 형사정책적 함의

물론, 청소년성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가무를 즐기는 국민성과 접대문화에 터잡아 전국적으로 유흥·향락업소가 넘쳐나고, 영계문화는 청소년들의 유흥업소고용을 부추기고 있으며, 열악한 사회보장시스템이 그들의 성매매를 방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처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처벌이나 처벌의 강화는 그리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이 청소년성보호라는 공익의 증진이라면, 적어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최고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단들을 먼저 투입하여야 하고,⁴⁸⁾ 그러한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령, 성매매의 상당수는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채팅에 의존적이라고 한다.⁴⁹⁾ 그렇다면, 그 인터넷 사용시의 익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떠올려 볼 수 있고, 이는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⁵⁰⁾ 또 성매매의 주원인이 용돈이나 가출후의 생활비마련이라면,⁵¹⁾ 필요한 용돈을 독일처럼 아예 국가에서 지급하거나⁵²⁾ 혹은 가출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한편, 성범죄자의 전과비율은 60%이며,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33.5%에 이른다⁵³⁾는 사실은 성범죄가 하나의 성향 내지 경향범적 속성을 띄고 있음을 말해 준

48) 종종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라는 공익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적인 이익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가령, 이영란, 전계보고서, 3면 ; 황성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57면 이하.

49) 76.8%에 이르던 인터넷의 활용이 2002년에는 58.7%(전화방 13.2%)로 줄었다(조선일보 2003.2.11일자 사회면) 7차 공개시에는 68.3%로 다시 증가하였다고 한다(중앙일보 2004.7.14일자 사회면).

50) 가령, 아예 인터넷 접속시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거나 혹은 화면저장기능을 가진 음란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1) 채규만, 청소년 성매매자들의 신상공개에 심리적인 영향(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25면 ; 조선일보 2003. 2. 11일자 사회면.

52) 18세까지 1인당 154유로(약20만원)를 지급하고, 네 번째 아이부터는 1인당 179유로를 지급한다.

53) 범죄분석 2002, 법무연수원, 64면. 제7차 신상공개 대상자 17.6%는 2명 이상을 상대로 성

다. 따라서 신상이나 얼굴공개라는 부담처분보다는 차라리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계문화’와 같은 그릇된 국민의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를 바로잡거나 혹은 음성소득의 창출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술자리에 뒤따르는 이른바 ‘2차 문화’는 접대문화⁵⁴⁾나 음성소득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으로, 비정상적인 접대나 증뢰사실을 입증하는 자에게 처벌이 아니라 그 몇 십배의 혜택을 준다면, 사회의 부패구조와 더불어 ‘2차 문화’도 상당히 시정될 것이다. 혹은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자 하는 대구 수성구청의 시책처럼,⁵⁵⁾ 향락업소의 편법이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당액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에 또 다른 처벌적 성격의 조치들을 덧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屋上屋의 구상이다. 신상공개나 그 개정안이 담고 있는 형사정책적 함의는 바로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처벌강도보다는 먼저 ‘처벌의 확실성’이 너무 낮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성범죄자가 100% 검거·처벌된다면, 현행 법정형의 절반으로도 성범죄는 대부분 사라지고, 나머지 극소수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마 배제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강도를 높이는 신상공개나 그 개정안보다는 차라리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⁵⁶⁾

일례로 성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해 두는 방안을 떠올려 볼 수 있다.⁵⁷⁾ 성범

범죄를 범했고, 37.7%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4.7.14 일자 사회면.

54) 이른바 ‘2차’의 77%는 ‘친목이나 업무상접대’를 이유로 들고(조선일보 2002. 12. 10일자 사회면), 또 강남의 향락업소에서는 결제수단의 70% 정도가 법인카드라고 한다(조선일보 2003. 2. 18일자 A9).

55) 2003. 1. 3일부터 접대부의 고용·알선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십만원을 보상해 주고 있다.

56) 그럼에도 현행 공개제도가 개정안과 같은 방안들보다는 덜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없지 않았다. 황성기, 전개논문, 57면 이하 ; 현재 2003.6.26, 2002헌가 14,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호(2003), 645. 그러나 이는 비교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임상규,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380면 참조.

57)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과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내용의 법안, 가칭 ‘유전자 감식정보의

죄의 8할 정도는 피해자의 知人들에 의해 자행되지만,⁵⁸⁾ ‘참고인 중지’로 인한 그 불기소비율(9.3%)은 오히려 다른 강력범죄(5.9%)보다 높다고 한다.⁵⁹⁾ 이러한 수사상의 필요성을 배제하더라도, 이 방안은 축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압박효과가 크고, 이는 아마 신상공개외의 재범억지력을 능가할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의 인권침해적 남용소지를 간과해서는 안되고,⁶⁰⁾ 그 필요성도 사실 의문스럽다. 그러나 신상공개도 허용되는 형국이라면, 이 방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 폐해는 신상공개보다는 훨씬 암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필요성을 앞세워 너무 극단적인 예외를 자꾸 양산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를 조금만 낮추면, 처벌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다. 예컨대, 형사사법기관의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 여성경찰서장이 보여주었듯이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각별하고, 그러한 만큼 단속대상과의 결탁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또 피해자의 이른바 ‘2차 피해’가 완화되어, 이들의 신고정신도 제고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노출시키지 않을 보다 확실한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⁶¹⁾ 가령, 녹화테이프에 의한 진술이나 비디오중계에 의한 증언 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⁶²⁾

그리고 낮은 처벌가능성은 범죄의 기대이익을 높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소 엄격해야 한다.⁶³⁾ 이른바 ‘운이 없어서 잡힌’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당성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의 범죄유혹을 차단하려는 일반예방적 의도가 허용된다.⁶⁴⁾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그 정당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내로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4.11.29일자 사회면.

58) 지광준, 성범죄, 1998, 48면.

59) 이에 대해서는 이승환, 여성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 신설 제안(2003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56면.

60) 문화일보 2002. 11. 22일자 사설 참조.

61) 이에 대해서는 심희기, 전개논문(2003), 3면 이하 참조.

62) 2002년 5월에 전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법개정안 21조의 2는 피해자진술에 대한 영상물촬영을 의무화하고, 21조의 4는 비디오 등의 중계에 의한 진술방안을 담고 있었다.

63) 박세일, 범경제학, 395, 406면 ;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2002), 60면 이하 참조.

64)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이른바 책임범위이론. 임상규, 책임범위이론의 재구성, 비교형사법연

성의 기준을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다만, 처벌의 이면에서는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치료·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타율적 개선의 논리와 가능성이 다소 의문스럽기는 하지만,⁶⁵⁾ 적어도 현재의 학문수준에서는 범죄자를 재사회화시키려는 교정이념 및 그 노력 자체가 포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⁶⁶⁾

IV. 결어

따라서 특정한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은 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사실, 주소지를 벗어나 친척집이나 숙박업소를 전전하거나 쪽방 내지 노숙자생활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격감하고,⁶⁷⁾ 그 빈자리를 차지할 사회에 대한 악감정은 축차적인 범죄를 위한 중화기술로 작용할 것이다.⁶⁸⁾ 이처럼 惡은 惡을 전파한다. 따라서 형벌이라는 惡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 惡에다 또 다른 惡을 덧붙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의 부정적 가치들을 지나치게 널리 선전할 일은 아니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감각과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거나 ‘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능에 커다란 손상’⁶⁹⁾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형벌권의 무기화를 포기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윤리의 과도한 무기화’가 오히려

구 제2권 제2호(2000), 87면 이하 참조.

65) 배종대, 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재사회화목적의 문제점, 고시연구 1985. 11, 65면 이하 ; 이수성,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1990), 18면 이하 ; 이상돈, 법학입문(1998), 136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 형벌은 오직 수형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훼손할 뿐이다”.

66)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242면.

67) 이성식, 처벌의 조건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1호(1996), 246면 이하 참조.

68) 배종대, 형사정책(제5전정판), 260면 이하.

69) 이는 2003.6.19일에 총13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발표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합헌결정보고회 자료집 참조.

려 처벌맥락 및 범죄자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식부족을 보여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⁷⁰⁾ 성매수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자는 요구에 응답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18세의 소녀와 동침한 사람에 대하여 살인한 정도의 비난을 퍼붓는 윤리형법은 조만간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 윤리적 요구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그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허망한 상징성만 쫓기 때문이다.

현행 신상공개는 이미 그러한 상징적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럿이 함께 당하면 망신이 반감된다”⁷¹⁾는 명예형의 기본맥락을 벗어난 주기적인 대량의 공개행사는 대상자들이 숨어들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다시 표류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싣고 인권의 바다에서 몰려오는 거센 격랑을 넘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얼굴공개에 다음에는 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가 미리 궁금하다. 그리고 또한 그 끝은 어디일지도 대단히 궁금하다. 끝내는 상점절도범의 얼굴도 공개하자는 분위기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과도한 겁주기나 흔들기에는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거기에는 확실하게 빗장을 쳐야 할 것이다.

70) 현재 2003.6.26, 2002헌가14에서는 이미 현행 신상공개가 “단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제1집(2003), 652면.

71)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277면.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이 미 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생존자¹⁾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이 미 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I. 머리말

UN에서 1989년 채택된 『국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 발전, 보호, 참여권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아동권(청소년권)²⁾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92개국에 비준을 했고, 청소년들이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그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즐기도록 보장하는 것을 세계 공동체에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사회에 청소년 보호와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 시행 초기부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매 회

1)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대신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생존자들은 피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분노 등을 겪지만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를 갖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하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 ‘아동’은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는 신상공개대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이므로 이 글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신상공개 때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 언론매체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정도 파탄 위기에 처하는 등 응분의 죄 값을 치른 상황에서 신상까지 공개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해, 2003년 헌법재판소가 신상공개 합헌판결³⁾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청소년 보호 정책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판결이었음에도, 이중 처벌론과 과잉처벌론 등의 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사진까지 공개하는 세부정보공개를 담고 있어 성범죄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상공개 관련 기존의 논의에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 되기보다는 법조인과 학계에서 법리적 해석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피해사실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성폭력 범죄의 고소율은 10%미만으로 추정되고,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생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성폭력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직면해 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자들은 신상공개 관련 논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입장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이지만, 여기에서 성보호⁴⁾란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보되, 그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성적 활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위헌이 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이 건은 5명이 위헌의견을 표명해 결과적으로 합헌이지만, 수적으로는 4대5로 위헌 의견이 우세하였다.

4) 김태현외(2002),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 (1)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의 40%가 청소년
- (2) 낮은 고소율
- (3) 다양한 피해 유형 및 심각한 후유증

3.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4.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이중처벌론, 중벌론 등에 관한 반론 포함)

- (1) 피해 생존자의 회복의 의미
- (2)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의 계기
- (3) 일반인의 인식전환, 계도성
- (4) 통합적 피해자 지원과 연관

5. 맺음말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현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정 연 주 교수 (동국대 법대)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권 창 국 교수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이 수 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 용 탁 과장 (한국更生보호공단)

지정토론 1 현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정연주 교수 (동국대 법대)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정연주 교수 (동국대 법대)

I.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내용과 취지

1.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내용

여기서 문제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것은 제20조의 2와 제20조의 3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 2 (세부정보의 공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로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동 대상자의 신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공되는 세부정보는 각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사진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세부정보 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2항 각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정보의 열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 자료의 등사나 복사 및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세부정보공개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간 제공된다.

⑥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세부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연 2회 지방경찰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등록정보가 바뀌는 경우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3호를 제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정보의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정보의 악용금지) 누구도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취지

이 제도는 이른바 미국의 메간법을 참고한 것으로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성을 보완·제고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위헌시비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동 대상자의 신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등 특별히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여 그들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일반 신상공개와 함께 또는 일반신상공개를 대신하여 이웃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반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인 사회일반에 대한 계도, 일반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방지 등 일반인에 대한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를 통한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보호효과 보다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성범죄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한 ‘등록제도’와 ‘지역사회에의 통지’를 주내용으로 하면서 미국의

매간법의 경우와 같이 출소한 성범죄자를 경계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한다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이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이 기존의 일반 신상공개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II. 현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현재가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사건에서 기존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내린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의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 판단의 대상이 다르고, 현재재판관들의 입장도 가변적일 수 있으며, 장래 재판관의 인적 구성도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를 때 세부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일정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세부정보공개의 대상만이 될지 또는 양자 모두의 대상이 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판시에 비추어 개정안의 세부정보공개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굳이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지 않을까 예상 내지 추론된다.

1. 현재의 합헌의견과 관련하여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합헌의견

위 결정에서 4인의 재판관이 기존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합헌의견을 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신상공개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으로 이는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신상공개제도를 통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신상공개제도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공범적 성격의 것들로서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6)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여부

제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기, 기간, 절차 등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이미 법조항을 통해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2) 합헌의견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검토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이 신상공개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상 추가적인 세부정보공개 역시 이러한 ‘처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이 일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인 청소년의 성보호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중에서 그 특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운 일정한 범죄자들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 및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로써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세부정보공개제도의 입법목적 역시 우리사회의 매우 긴절한 중요한 공익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나.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이 범죄인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상식적으로 일반 성인들에게 미성년자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부신상공개의 경우에도 일정 범죄자들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 및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로써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합

헌의견이 신상공개제도와 미국의 메간법과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 이른바 메간법의 경우와 같이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한다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출소한 성범죄자의 세부정보를 공개하는 메간법의 내용과 목적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한다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러한 정보제공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 내지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메간법의 내용과 유사한 세부정보공개제도 역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중에서 그 특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운 일정한 범죄자들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 및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로써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의 “... 행정당국이나 경찰당국에 범죄자의 명단을 등록케 하고, 지역주민 등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알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보나 인터넷 이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개수단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라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등록과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정보공개제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개정안 제20조의 2 제4항이 “정보의 열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 자료의 등사나 복사 및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3(정보의 악용금지)은 “누구도 ... 제20조의2에 의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합헌의견은 세부정보공개제도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인 반면,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등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공개되는 내용 중 범죄자의 사진을 추가하고, 일반인이 아닌 한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정보공개제도 역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이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그 밖의 일반범죄와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공범적 성격의 것들로서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특별한 유형의 범죄자의 세부정보를 일정한 대상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경우에도 역시 세부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다른 일반범죄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세부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구별되고, 그러한 구별을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합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가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세부정보공개제도도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5)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합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세부정보공개에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므로, 이 제도가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으로 여겨진다.

6)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합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시기, 기간, 절차 등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이미 법조항을 통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세부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개정안 제20조의2 제8항이 “정보의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규정의 경우에도 정보의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이미 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내지 제7항으로부터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현재의 합헌의견에 비추어 볼 때 세부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도 대체로 합헌시 할 것으로 보인다.

2. 현재의 위헌의견과 관련하여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의견

위 결정에서 5인의 재판관이 기존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의견을 냈으며, 그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 입법목적의 불명확성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취지와 관련해서,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공개를 통해 징벌 및 위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그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는 등 그 견해가 분분하다. 이처럼 불분명한 입법의도로 말미암아 통상적으로 이 제도에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들이 모두 혼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바로 이 때문에 신상공개는 그 어떤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운용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나. 수단의 부적합성

신상공개제도가 정보제공으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오히려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부적절한 공개기간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의 최소성 위반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계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질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라. 법익의 균형성 위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낮았다.

2) 평등원칙 위반

일반 범죄자 및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기간·절차 등은 단순한 부수적 사항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하위법령을 보지 않고 법만 가지고서 신상공개제의 구체적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신상공개제도는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위헌의견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검토

위헌의견을 기준으로 세부정보공개제도의 위헌여부를 검토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를 합헌으로 보는 의견과는 달리 위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는 세부정보공개제도를 위헌으로 볼 공산이 큰데, 다른 한편 신상공개제도와 무관하게 세부정보공개제도만을 따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은 예측불허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목적의 명확성과 정당성

위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메간법에 대하여 위헌의견이 “메간법은 그 구체적인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출소한 성범죄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한 ‘등록제도’가 우선적인 것이고, ‘지역사회에의 통지’는 부차적이다. … 지역사회에의 통지제도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성범죄자의 출소 사실을 통지하여 그를 경계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그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그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 메간법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메간법과 유사한 우리의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경우에도 그 입법목적이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그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아울러 정당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나.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위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가 정보제공으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오히려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부적절한 공개기간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제도와는 달리 정보내용이 보다 세부적이고,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변동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제공의 대상범위도 이웃 주민 등 잠재적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그 공개의 기간도 형의 집행 또는 출소 후 일반신상공개에 경우보다 장기로 제공되어서 비교적 입법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위헌의견이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이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계도라고 한다면, 굳이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없이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아울러 다른 예방책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목적이 성범죄

죄의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신상공개제도와 다르고 아울러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정보공개가 일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신상공개제도를 미국의 메간법과 비교하면서 그 법의 목적이 신상공개제도와 다르고 따라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한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최소침해의 원칙의 측면에서 메간법을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메간법과 유사한 내용의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위헌의견은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바, 이러한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부정보공개 경우에는 비록 그 제도의 실시를 통해 침해되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달성코자 하는 분명하고 현저한 공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의 평등의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 청소년 성매수죄는 성매매에 관해 상대 청소년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폭력성이나 불특정인이 불의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에 관해 상대 청소년의 동의가 있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정보공개제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폭력성이나 불특정인이 불의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있고, 다른 한편 이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개정안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로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

은 경우에 동 대상자의 신상에 관하여 세부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부정보공개가 재범의 위험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도에서 나름대로의 차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부정보공개제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의견은 “신상공개는 이미 형사처벌된 범죄행위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자의 행위요건이 없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행정제재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방지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그것도 제도나 정보제공보다는 주로 징벌 및 위하의 효과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이 형벌과 상당히 중복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상공개를 성질상 징벌과 위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형벌 내지 처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세부정보공개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세부정보공개제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상자에 대한 징벌이나 위하의 효과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자의 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제도와 구별될 수 있고, 따라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의견은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하위법령을 보지 않고 법만 가지고서 신상공개의 구체적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상공개제도는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의 2 제8항에서도 “정보의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현

행법 제20조 제5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정보공개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의 대강을 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 현행법상의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한 경우 보다 -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세부정보공개 경우에는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소결

결국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의견의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부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합헌시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접쳐진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이번 개정안의 세부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취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현재의 결정내용, 현재의 결정내용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합헌의견은 세부정보공개제도 역시 합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위헌의견의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위헌의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공개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세부정보공개제도를 합헌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권 창 국 교수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권 창 국 교수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I. 序論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004년 10월 4일 입법예고를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등을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고소제한 기간의 연장, 가해청소년 및 대상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수감명령의 확대적용, 대상청소년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 친족 등 보호자에 대한 통지규정 등 외에, 기존의 계도문 방식의 신상공개에 추가하여 공개대상자의 사진, 세부주소의 공개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하여 5년간 청소년 및 아동교육, 복지시설 등에의 취업제한 및 동 시설의 장에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불응시의 과태료부과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핵심적 쟁점인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지만, 이중처벌금지원칙에의 위배, 신상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 공개대상자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평등원칙의 위배,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에 대하여 200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판단을 제시함으로써,¹⁾ 이에 대한 여론적 지지의견과 함께, 정보위의 금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지향한 위 개정안에 대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는 기존에 이른바 한국형 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 notification)라 할 수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그 위헌성의 조심스러운 개진을 시도한 바 있고, 특히, 상기 헌법재판소결정례에 앞서, Alaska 및 Connecticut주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미연방배법원 판례를 참고로 위 현재결정례를 검토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본 공청회의 발제내용을 참고로, 위 개정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간략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II. 美國의 性犯罪者 身上情報登錄 및 公開制度(Megan's Law,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의 檢討

1. Megan's Law의 登場背景과 成立過程, 具體的 形態

미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는 1997년 Megan Kanka라는 7세 소녀가 이웃에 거주하며, 2번의 성범죄전과를 갖고 있던 Jesse Timmendequas에 의하여 강간 살해된 것을 계기로 New Jersey주는 동 제도를 법률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Megan's Law로 명명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New Jersey주에 앞서, 1990년대 초부터 미국 각 주정부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를 입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참고로, 신상정보의 공개가 아닌 등록에 제한된 형태지만 1947년 California주는 최초로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입법화하였고, Washinton주는 공개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한 바 있다.²⁾

1)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결정.

2) Kimberly B. Winkin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Laws : Will These Laws Survives ?", University of Richmond Law Review 37. 1245, 2003. 5, p.3(footnote,12, 13); Wayne A. Logan, "Criminal law : Liberty Interests in the Preventive State : procedural Due Process and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Laws", Criminal law & Criminology 89. 1167, 1999, p.1172.

한편, 미연방정부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를 입법화하는데, 미의회는 1994년 소위 Jacob Wetterling Act(Jacob Wetterling Crimes and Sexual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를 제정하는데, 동 법률은 FBI와 각 주, 자치단체의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 공유할 수 있는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잠재적 위협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등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각 주정부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주가 Jacob Wetterling Act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를 입법화하게 되는데, 1994년 제정 당시의 Jacob Wetterling Act는 각 주 정부 등의 법집행기관이 등록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재량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1996년 성범죄자들로부터 보다 강화된 지역사회 보호를 이유로, 신상정보의 공개를 필요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미의회는 the Pam Lyncher Sexual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소위 Pam Lyncher Act)를 제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FBI 자체 database를 구축함과 동시에, FBI 및 각 주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성범죄자의 주(State)간 이동,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상호교환의 증진을 시도하며,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에 관한 2회 이상의 전과소지자나 폭력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간을 평생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시 1998년 미 의회는 성범죄자의 등록의무 등을 강화하게 되는데, 폭력적 성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거나, 그러한 행위충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정신 및 성격이상자들을 소위 ‘폭력적 성범죄자’(sexually violent predators)로 분류하되, 각 주 정부에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을 입법화할 것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평생 등록의무뿐만이 아니라, 성명, 주소, 기타 개인식별요소(사진, 지문 등)들 이외에도, 예를 들어, 장래 예상되는 주거지의 주소, 범죄전과, 정신 및 성격이상 등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경력의 등록도 의무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폭력적 성범죄자의 식별, 분류작업은 성범죄자의 치료나 행동에 관한 전문가나 성범죄피해자 전문가, 법집행기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위 연

방법률의 권고 외에 주 법률이 폭력적 성범죄자를 식별,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기준 및 위와 같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가용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함께 설정함으로써, 각 주정부는 법원이 아닌(not involving the judiciary in assessment)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 기타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y)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전체적으로, 미국은 1990년대 초반이후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대부분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제도를 입법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등록의무, 범위 등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50개 주 및 District of Columbia 모두가 각기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32개주는 등록자료를 internet상에서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⁴⁾

한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배경으로는 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폭력적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the protecting of public safety, especially preventing crimes against children)함에 두고, ② 그 일환으로 일정한 신상정보의 등록(registration)의무를 성범죄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통해 범죄자의 식별, 추적관리, 유사범죄시 신속한 용의자 선별에의 활용 및 사회복귀 이후에 재범 등에 대비한 감시활동 등에 활용함과 ③ 동시에 일정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형기만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범죄자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 ④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치료 프로그램은 결국 실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지속적인 감시뿐이며, 따라서,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는 무기형등의 중형부과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저비용 범죄예방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높은 재범률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⁵⁾

한편, 미국의 각 주에서 운영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는 크게 지역사회에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대상 성범죄자의 분류방식에 따라, ①

3) Kimberly B. Wilkins, op. cit., pp.3-6.

4) <http://www.meganslaw.org>(2003. 12. 17).

5) Kimberly B. Wilkins, op. cit., pp.6-8; Carol L. Kunz, "Comment, toward Dispassionate, Effective Control of Sexual Offenders",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47. 453, 1997, p.471;

compulsory notification system과 ② discretionary notification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compulsory notification system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아동 대상 또는 기타 등록대상이 된 폭력적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인 등록의무의 부과와 등록자료의 공개를 취하는 형태로서, 미국 내 19개주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평가과정이 없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방식의 특징이라 하겠다. 2003년 미연방대법원에서 문제된 Alaska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률이 바로 이러한 compulsory notification system의 예라 하겠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 또는 상습성은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 해당 성범죄자의 유죄확정판결이 바로 그 점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고에 바탕한 것이다.⁶⁾

다음으로, discretionary notification system은 나머지 31개주 및 District of Columbia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여부(즉, 재범의 위험성, 상습성 여부의 판단)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별적 판단절차를 두고 있다. 또, 단순히 등록 및 공개여부 뿐만이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 형태, 기간 등도 아울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등록 및 공개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그에 앞서 등록 및 공개여부, 그 범위, 기간,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⁷⁾

대체로, 재범 등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나누어, 1단계(low risk of reoffense)하에서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만이 강제되는데, 대개 유죄판결확정 및 형기만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 시에 해당 성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2단계(moderate risk of reoffense)하에서는 학교, 기타 공공단체, 청소년·사회단체 등에 한정된 제한적 범위에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단계(high risk of reoffense)에서는 소위 대중적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적 게시물 등에의 게재, 회람발송, 경찰관의 방문통지, internet web site상의 공개 등 다양한 공개방법을 취하고 있다.

6) Wayne A. Logan, "A Study in Actuarial Justices : Sex Offender Classification Practice and Procedure", Buffalo Criminal Law Review 3. 593, 2000, p.599.

7) Kimberly B. Wilkins, op. cit., p. 6.

2. Megan's law에 관한 美國判例의 分析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위헌성 판단과 관련하여, 대부분 ① privacy권의 과도한 제약 내지 침해와 관련하여, 실체적 적법절차원칙(substantive due process), ② 등록 및 공개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청문, 반론기회를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등, 절차적 적법절차원칙(procedural due process), ③ 사후입법(Ex Post Facto Law)금지원칙, ④ 이중처벌금지(double jeopardy)원칙의 위배여부가 문제되고 있다.⁸⁾

(1) 實體的 適法節次原則(substantive due process)의 違背與否

먼저, privacy침해에 바탕한 실체적 적법절차원칙(substantive due process) 위배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등록 및 공개로 인하여 야기되는 성범죄자의 Privacy제한(침해)와 범죄예방효과 등 공익적 요소간의 비교형량 문제라 할 수 있다. 미연방헌법에는 privacy의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수정 제5조와 제14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주는 미연방헌법에 따라, 그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적(fair and reasonable in contents)이며,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a legitimate governmental objective)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지게된다. 미연방대법원은 privacy란 '개별적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미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함축된 권리로 인식한 바 있다.⁹⁾ 통상 형사범 영역에서, privacy침해의 조건으로 첫째, 권리 행사자가 실질적 내지 주관적으로 privacy의 기대(actual and su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가 가능하여야 하며, 둘째, 이러한 privacy에 대한 기대는 사회가 합리적인 것(as reasonable)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미 판례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가 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privacy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8) Amy L. Van Duyn, "The Scarlet Letter Branding :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Community Notification Provisions in Sex Offenders Statutes", Drake University law Review 47. 635, 1999, pp.4-6.

9)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478(1928); Roe v. Wade, 410 U.S. 113, 152(1973).

10)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361(1967).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축소된 범위에서만 privacy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대상 정보도 충분한 공개의 공익성과 공공기록(public record)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개 등에 따른 공익이 성범죄자의 privacy 라는 사익을 압도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¹¹⁾

실례로, Doe v. Poritz사건에서¹²⁾ New Jersey 주대법원은 성명, 주소, 연령, 전과 기록, 보유차량종류, 사진 및 지문 등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시, 공개대상자의 privacy에의 합리적 기대 존재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위험한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익이 성범죄자의 privacy를 상회함으로써 성범죄자의 privacy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만, 주소공개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privacy침해를 긍정한 바 있다. 한편, 미연방소법원의 경우, 주소지 공개의 경우에도 성범죄자의 privacy에 대한 과도한 침해나 제약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¹³⁾ 미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언급할 절차적 적법절차의 전제문제로서 간접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미연방대법원은 Paul v. Davis사건에서¹⁴⁾ 수사기관이 상점 절도범의 성명, 사진 등을 인근 점포 등에 공개한 사안에서 privacy침해는 없다고 판단한 예로 알 수 있듯이, 범죄자에게 privacy의 합리적 기대범위를 일반인에 비하여 축소된 형태로 이해하며, 이는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2) 節次的 適法節次原則(procedural due process)의 違背與否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 및 제14조는 자신의 생명·자유·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기 전에 자신의 견해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고지 및 청문절차가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 및 공개대상인 성범죄자도 자신의 이

11) Wayne A. Logan, "Criminal law : Liberty Interests in the Preventive State : procedural Due Process and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Laws", Criminal law & Criminology 89. 1167, 1999, p.1187.

12) Doe v. Poritz, 662 A. 2d 367(N.J. 1995).

13) Paul P. v. Verniero, 170 F.3d 396, 404(3d Cir. 1999), "while a privacy right exists i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states and public interest in disclosing the information outweighs any infringement on a sex offender's privacy right".

14) Paul v. Davis, 424 U.S. 693(1976).

익이 공개 등에 의하여 훼손되기 전에 충분한 고지 및 청문절차가 확보되어야 하고 만일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 법률은 위헌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위헌주장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등록 및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확보되는 성범죄자의 이익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liberty or property interest previously enjoyed under the law)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고지 및 청문기회의 부여 없이, 알코올 음료의 판매를 거부하고 그 성명을 게재하게끔 한 Wisconsin주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Wisconsin v. Constantineau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불명예의 상징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적용된다는 이유로 동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¹⁵⁾ 그러나, 앞서 언급한 Paul v. Davis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형태로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 판례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은 한 개인의 단순한 사회적 평판 등만에 대한 손상은 어떠한 헌법적 보호이익과도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앞서 Wisconsin v. Constantineau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회적 평판만이 아니고, 자유롭게 알코올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유죄확정 전에 상점절도범으로 자신의 성명, 사진 등이 8백여 개의 지방점포 등에 공개되어, 공개된 자의 사회적 평판, 지위 등(reputation and stigmatization)만이 문제될 수 있는 본 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후, 이와 유사한 논점이 쟁점화 된 사례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한 많은 하급심이 Paul v. Davis 사건을 통해 정립된 소위 'stigma-plus doctrine'을 따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Russell v Gregorie사건에서,¹⁶⁾ 미연방항소법원은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규정한 Washington주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문제되는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진료 기록과 같은 개인적 성격의 정보가 아닌 공공기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다른 수단(예를 들어,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privacy등에 대한 침해문제는 없고, 따라서, 적절한 고지 및 청문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그 전제성을 상실, 합헌으로 판

15) Wisconsin v. Constantineau, 400 U.S. 433(1971), "where the state attaches a badge of infamy to the citizen, due process comes into play".

16) Russell v Gregorie, 124, F.3d 1079(9th Cir. 1997).

단하였다. 이후, 여타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한 바 있다.¹⁷⁾ 한편, 동일한 stigma-plus doctrine하에서도 상반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stigma-plus doctrine을 적용한 대부분의 판례가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법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일정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는 범죄행위 내지 유죄판결 자체에 의하여 받게되는 불이익과는 달리 그 지속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치고, 공권력에 의하여 정교하게 고안된 일종의 사회적 낙인(labeling)을 부과하는 점은 긍정하는데, Doe v. Pryor 사건과 같이,¹⁸⁾ 등록 및 공개에 따른 실직과 재취업상 불이익, 사회적 지위 변화 등은 단순한 사회적 평판 외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판단,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예도 있다.

한편,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제도의 절차적 적법절차원칙 위배에 대하여 2003년 3월 미연방대법원은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et. al. v. John Doe(2003)사건에서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데, 사안은 성범죄행위로 등록 및 공개대상인 된 원고 John Doe는 일률적으로 일정한 이상의 성범죄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DPS(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 성명,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하고 동 정보를 internet web site에 공개하도록 규정(compulsory notification)한 Connecticut주의 Megan's Law에 대하여, 연방법률인 Jacob Wetterling Act의 규정내용보다도 광범위한 모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강제하고, 재범 위험성 등이 높은 성범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 고지 및 청문절차 없이 일률적 등록 및 공개를 강제하여, 미연방헌법 수정 제14조가 보장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원칙 위배를 주장하였다. 이에 미연방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2nd Cir.)은 stigma-plus doctrine을 적용, 적절한 평가, 청문절차 등이 없이 일률적 등록 및 공개강제를 통해 원고는 일정한 법적 이익(liberty interest)의 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긍정하고, 등록정보를 공개한 internet web site를 폐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Connecticut주의 DPS 측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연방대법원은 이에 certiorari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먼저

17) Lanni v. Engler, 994 F. Supp. 849, 855(E.D. Mich. 1998); Cutshall v. Sundquist, 193 F3d 466, 478-81, 483(6th Cir. 1999); People v. Logan, 705 N.E. 2d 152, 160-61(Ill. App. Ct. 1998).

18) Doe v. Pryor, 61 F.Supp. 2d 1224(M.D. Ala. 1999).

미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가 미국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범죄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성범죄로 유죄확정 및 형만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한 성범죄자는 재차 여타 유형의 성범죄를 행하여 검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Connecticut주 및 기타 대부분의 주가 채택한 Megan's Law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동법의 목적은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자의 검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stigma-plus doctrine을 제시한 Paul v. Davis 사건을 재 언급하면서, 단순한 사회적 평판은 여기서 말하는 법적 이익(liberty or property interest)이 될 수 없으며, 법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원고 및 하급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Connecticut주의 Megan's Law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등록 및 공개대상인 성범죄의 유죄확정판결만으로 그 위험성을 결정, 등록 및 공개를 강제하는 compulsory notification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언급한 뒤, 따라서, Connecticut주의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성범죄자의 위험성은 확정판결 및 형에 의하여 곧 바로 판단되도록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해당범죄의 공판절차 등을 통해 원고는 충분히 자신의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국,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미연방헌법이 보장한 실제적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이익(liberty or property interest)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고지 및 청문기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위배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하여 합헌판단을 내리게 된다.¹⁹⁾ 하지만, 본 판례의 보충의견을 통해, Souter 연방대법관은 Connecticut주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과정의 양형결정 등을 통해 일정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실제적 적법절차원칙(substantive due process)과 관련, 평등원칙

19)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et. al., petitioners v. John Doe, individually and on behalf of all others similarly situated, 123 S. Ct. 1160(2003), "In short, even if respondent could prove that he is not likely to be currently dangerous Connecticut has decided the registry information of all sex offenders - currently dangerous or not - must be publicly disclosed. Unless respondent can show that substantive rule of law is defective(by conflicting with pa provision of a constitution), any hearing on current dangerousness is a bootless exercise. ... Plaintiffs who assert a right to a hearing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must show that the facts they seek to establish in that hearing are relevant under the statutory scheme. Respondent cannot make that showing here."

의 위배(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를 피고인이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긍정한 바 있다.

(3) 事後立法禁止原則 및 二重危險禁止原則의 違背與否

1) 事後立法禁止原則(Ex Post Facto Law)

미연방헌법은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s shall be passed.”(U.S. Const. art I, 9. Cl. 3.), “No states ...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U.S. Const art I, 10. Cl. 1.)라고 기술하면서, 사후입법을 통한 권리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통상, 사후입법금지원칙의 핵심은 바로 “공정한 경고부여(fair warning)”라 할 수 있는데,²⁰⁾ 미연방대법원은 금지되는 사후입법유형으로 행위시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화 하거나, 보다 중한 범죄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행위시 보다 형을 가중하거나 증거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유죄판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을 예시한 바 있다.²¹⁾ 그 뒤, Kansas v. Hendricks사건을²²⁾ 통해 금지되는 사후입법의 유형의 판단기준으로 소위 ‘intent and effects test’가 제시되는데, 이는 사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권리박탈 내지 형벌적(punitive) 성격을 지녀야 함을 전제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째, 우선 당해 법률의 입법의도(legislative intent 측면)가 고려하되, 만일 그 입법의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조문의 구성체계나 위치, 형태, 적용 사안의 유형, 가해지는 제재조치의 유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둘째, 만일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그 입법의도가 명확히 판단되지 못한 경우 또는 당해 법률이 행정법규나 민사법규의 형태로 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적용을 통해 부여되는 효과가 그 목적과 영향 면에서 처벌적 속성을 갖음으로 인하여, 단순한 행정적 또는 민사적 제어책(administrative or civil regulation & remedy)을 사실상 형벌(criminal penalty)로 기능하는지의 여부(effect 측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성범죄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의 등록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공

20) Amy L. Van Duyn, op. cit., p. 4.

21) Calder v. Bull, 3. U.S.(3. Dall) 386(1798).

22) Kansas v. Hendricks, 521 U.S. 346, 361(1997).

개하는 일련의 법적 조치가 권리박탈적 내지 형벌적인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게 된다. 특히, 전근대적인 명예형이나 치욕형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 형벌로서의 속성이 있는가 라는 점이 의문시되는데, 미연방대법원은 *Kennedy v. Mendoza-Martinez* 사건에서,²³⁾ 형벌성의 판단기준으로 당해 제재수단이 ① 적극적인 무능력화(disability)나 제재효과(restraint)의 여부, ② 역사적인 형벌로서의 인식여부, ③ 응보(retribution)와 억제(deterrence)라는 형벌의 전형적 기능수행 여부, ④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의 여부, ⑥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의 여부, ⑦ 고의적 행동에만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소위 'Mendoza-Martinez factors')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는 사후입법금지와 관련하여 형벌적 성격을 띤 제재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앞서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v. Doe* 사건과 동시에 Alaska주의 *Megan's Law*가 사후입법을 금지한 연방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²⁴⁾ 사안은 폭력적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확정 및 형기를 만료하고, 재사회화 프로그램까지 종료한 원고에 대하여, 사후 제정, 시행된 Alaska주 *Megan's Law*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갱신하도록 하자, 이는 연방헌법이 규정한 사후입법금지에 위배됨을 주장한 사례이다. 연방지방법원 및 항소법원(9th Cir.)은 동 법률의 등록 및 공개규정은 그 속성이 형벌적 성격을 갖음으로 이는 사후입법을 금지한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였다.

원고측은 형기만료 후 사회로 복귀하면서 회복된 제 권리, 예를 들어, privacy,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를 강제에 의하여 침해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적인 권리침해는 Alaska주 법률이 compulsory notification 방식을 취하고, 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 등의 위험성에 대처하기보다는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형벌적(punitive) 성격이 강하여, 사후적으로 적용된 동 법률은 사후입법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Kennedy v. Mendoza-Martinez*, 372 U.S. 144(1963).

24) *Delbert W. Smith and Bruce M. Botelho, petitioners v. John Doe I et al.*, 123 S. Ct. 1140(2003).

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intent and effects test를 재차 확인하면서, ① 문제된 Alaska주 법률이 형사소송법전(criminal procedure codes)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문의 위치, 구성체계 등은 당해 법률이 규정한 제재수단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속성에 불과하며, 또한, ② 등록 및 규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사전 고지 하에 부과되는 것이고, 문제되는 성범죄와는 별개의 사안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공개 및 등록제도가 형벌적 속성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Mendoza-Martinez factors를 적용하더라도, ③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비난(stigmatization)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공개형 내지 대중적 조소에 의한 결과가 아닌,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신원조회(background test)로부터도 확보할 수 있는 공적 정보(public information)에 불과한 전과사실 등에 의한 것으로, 등록 및 공개에 형벌적 속성을 인정할 근거로 인식하기 어렵고, 전통적으로도 진실한 정보의 배포행위는 형벌로 인식되어오지 않았으며, ④ 원고측은 자신의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이 공개됨으로서 인하여, 대상자가 이주, 직업선택 등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의 임대주나 고용주는 흔히 동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신원정보의 획득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며,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더라도, 이로 인해 직접, 거주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석방(parole)이나 보호관찰(probation) 등과 비교할 때, 등록, 갱신 등의 의무만이 부과될 뿐, 거주지 이전 등이 금지되는 경우는 없어, 결국 원고측 주장대로 일정한 권리가 박탈되는 측면도 인정하기 어렵고, ⑤ 더 나아가, Alaska주 법률은 internet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허용하고 있지만, 위험한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편리한 한 수단일 뿐, 이로 인하여 등록 및 공개의 속성이 형벌적인 것으로 변화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⑥ 등록 및 공개제도가 성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행정적 규제책(regulatory scheme)도 그러한 속성을 갖을 수 있으며, Alask주 법률은 등록 및 공개대상인 개별 성범죄자의 위험성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범죄행위에 과한 정보공개에 불과하여 응보적(retributive) 성격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⑦ 또한, 등록 및 공개기간 역시, 대부분의 성범죄자의 재범형태가 형기만료 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을 성범죄자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의도(regulatory scheme)에 바탕한 비형벌적 제재조치(not criminal but civil sanction in intent, purpose and effects of law)에 해당하여 사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관 10인 중 7인(Kennedy, Rehnquist, O'Connor, Scalia, Thomas JJ., Thomas J.)의 다수견해로 하급심을 파기하였다.

이에 반해, Stevens, Ginsburg, Breyer 3인의 대법관은 위 다수견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먼저, Ginsburg와 Bryer 대법관은 Alaska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 대상자에게 부담적이고 침해적 성격을 갖고, 모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일종의 추방제도(ostracism)적 성격을 갖음으로, 당연히 형벌로서의 속성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가석방(parole)이나 보호관찰(probation)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제한과 그 속성을 같이함으로 사회적 비난과 오욕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형벌로서의 성격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사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Steven 대법관도 등록 및 공개대상인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시 갱신 의무를 부담하고, 평생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이익(liberty interest)에 대하여 사실상의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동 법률의 등록 및 공개제도는 형벌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사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Steven 대법관은 Ginsburg, Breyer 대법관과 달리, 동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에 범행을 야기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한다면, 합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Alaska주 법률이 적절한 사전고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필자: 병과적 형태의) 형벌로서의 정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2) 二重危險禁止原則(Double Jeopardy)

한편,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s..."라고 규정, 이중위험노출을 금지하고, 수정 제14조를 통해 각 주에도 적용하고 있다. 원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대륙법계의 일사부재리원칙(non bis in idem : ne bis in idem)과 함께 원래 로마법

에 연원을 둔 개념으로, 고대 로마에서는 소송 피고인이 승소한 경우에 피고인 보호의 수단으로 재소의 위험으로부터 회피를 ‘소권(訴權)의 소모(消耗)’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대륙법계에서 중세의 가방면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근대법원칙으로서 일사부재리의 개념으로 재생하게 되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의 절차적 부담에 착안, 한번 절차적 부담을 받은 자는 두 번 받지 않는다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자 공히, 형사재판 효력에 대한 안정성 부여, 형벌권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제한원리로 고안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대륙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전통적으로 재판의 확정력 중,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기판력)의 외부적 효과로 파악하는 점에 영미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다소간 차이가 있다.²⁵⁾

통상, 이중금지원칙은 ① 재판확정 후 동일범죄에 대한 재차 기소(a second prosecution for the same offense after acquittal or conviction), ② 동일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multiple punishments for the same offense)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고 있는데, ① 유형에 대하여 큰 논란은 없으나, 이중위험금지와 관련한 논란은 대부분 ② 유형에 집중되고, 특히, 형벌부과 후, 형벌 외의 제재(손해배상이나 기타 행정적 제재조치 등)의 부과가 이중위험금지원칙 하의 소위 ‘이중처벌금지원칙’(protection for multiple punishments)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²⁶⁾

미연방헌법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규정만으로 본다면, 사형이나 신체형(또는 자유형) 등이 부과될 수 있는 형벌 및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듯이, 그 문언이 매우 함축적이어서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이중처벌금지영역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1791년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가 규정되기 전, 1789년 Madison의 미연방헌법의 수정 및 증보안의 제안서에는 “no person shall be subject,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to more than one punishment or one trial for the same offense”로 되었고, 이 제안서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원을 통과, 상원에 제출되었으나, 상원에서의 심의과정에서, “no person

25) 白取祐司, 刑事訴訟法(東京: 日本評論社, 2000), 368-369頁; 田口守一·佐藤博史·白取祐司, 刑事訴訟法 教材(東京: 有斐閣, 2002), 100頁.

26) Brian L. Summers, "Double Jeopardy: Rethinking the Parameters of the Multiplicity Prohibition", Ohio state Law Journal 56. 1595, 1995, p.10.

shall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by any public prosecution”으로 변경, 이 변경 안 대로라면, 이중위험금지규정은 형사기소(public prosecution)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문제로 분명히 파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심의과정에서 “public prosecution” 부분이 생략되면서, 현재의 수정 제5조와 같은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형벌 외에 비형벌적 제재가 수반되는 사안에도 해석,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한편, 미연방대법원은 연방우편물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구금형과 벌금 중 선택적으로 부과하여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형을 병과한 Lange사건에서²⁷⁾ common law는 전통적으로 이중처벌금지는 이중위험금지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위험금지원칙도 마땅히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 이후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초기에는 형벌과 비형벌적 제재는 양립가능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는데, 주로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벌 및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 일련의 사안에서,²⁸⁾ 이중위험금지의 한 내용인 이중처벌금지는 기소(public prosecution)를 전제로만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를 일관해 왔다(‘statutory construction test’).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1989년 United States v. Halper사건을²⁹⁾ 계기로 수정되는데, 5총 85달러에 달하는 허위 의료보험청구로 인하여 2년의 구금형 및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피고인에게, 총 130,000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여기서 미연방대법원은 이중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이 형식적으로 형벌인지의 여부(즉, 형사기소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는 결정적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statutory construction test를 포기한 것을 아니지만, 민사적 손해배상(civil sanction)액이 손해액을 보전하는 이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이중처벌금지원칙(protection against multiple punishment)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

27) 85 U.S.(18 Wall.) 163(1873).

28)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사범에 대한 형사제재 및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Helvering v. Mitchell*, 303 U.S. 391(1938);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입찰과정의 사기행위로 부당하게 수주를 받아낸 사안에서 형벌 및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United States ex rel. v. Hees*, 317 U.S. 537(1943); 정부에 공급하기로 트럭의 공급가를 기만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안으로 역시 형벌 및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Rex Trailer Co. v. United States*, 350 U.S. 148(1956); 기타 *One Lot Emerald Cut Stones v. United States*, 409 U.S. 232(1972); *United States v. One Assortment of 89 Firearms*, 465 U.S. 354(1984).

29) *United States v. Halper*, 490 U.S. 435(1989).

하였고, 이후 Revenue v. Kurth Ranch사건에서³⁰⁾ 이 견해는 다시 한번 지지된 바 있다.

1989년 Halper사건 이후로, 이 문제는 많은 논쟁을 가져왔는데, 1996년 United States v. Ulsery사건에서 다시금 논의된다.³¹⁾ 자신의 농장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63개월의 구금형 부과 및 4년 간의 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을 허가한 뒤, 다시 피고인 재산에 대해 민사 압류신청(civil forfeiture)을 하여, 총13,250달러가 양 당사자간에 조정액으로 결정, 압류되었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부과 외에도 손해배상, 압류 등 민사상 제재조치를 가하는 이유는 ①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등의 실질적 손해를 보전하고, 범죄행위로 취한 이익을 완전히 회수함을 위하기도 하지만(remedial civil sanction), ② 형벌만으로 인한 처벌의 간극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형사재판에 비하여, 입증방법 및 정도가 용이하며,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서 형벌과는 또 다른 측면의 무능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potentially punitive civil penalty)도 지적되는데,³²⁾ 미연방대법원은 Ulsery사건에서 위와 같은 점에 주목하면서, 민사상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위험금지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민사상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형벌성을 갖는가의 여부는 범죄행위로 야기된 피해(액)과 부과된 민사상 손해배상액, 압류규모와의 균형여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도 하에, 사안의 압류처분을 형벌로 파악한 하급심(9th Cir.)은 이러한 양자간 명확한 비교형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 하급심 판단을 파기한 바 있다. 결국, 미 연방대법원은 입장은 이중위험금지원칙 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제재에 대하여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과도한 법의침해를 야기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성을 획득함을 전제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할까? 위에서 언급한 Alaska주의 Megan's law에 대한 Ex Post facto Law 여부의 판단에서, 등록 및

30) Revenue v. Kurth Ranch, 114 S. Ct. 1937(1994).

31) United States v. Ulsery, 116 S. Ct. 762(1996).

32) J. Andrew Vines, "United States v. Ulsery : the Supreme Court refuses to extend Double Jeopardy Protection to Civil in rem Forfeiture", Alkansas Law Review 50. 797, 1998, pp.9-11.

공개규정의 형벌성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의 Ulsey사건이 참고판례로 인용되면서, 미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laska주법 상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규정은 과도한 법적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도 인정할 수 없어, 형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림으로,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중위험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기존 身上公開制度에 대한 韓國 憲法裁判所 決定例의 分析

1. 憲法裁判所의 合憲意見에 대한 檢討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은 ①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3조상의 동 원칙은 이는 한번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또는 기소)할 수 없으며(재차기소의 금지), 나아가 동일범죄에 대하여 거듭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이중처벌의 금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의 공개제도가 동 원칙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상공개처분이 형벌적 성격을 지녀야 함을 지적하는데, 궁극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형벌 및 보안처분으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파악하면서, i) 공개 대상자에게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지는 이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부수적 효과이며, ii) 그 공개자료도 이미 판결문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여 소위 전근대적인 수치형, 명예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iii)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 수단을 설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범죄행위의 규정, 가하여질 형벌의 종류 등은 한 사회의 역사,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법감정 그리고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과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이유로, 성범죄자 공개제도는 충분히 타당한 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이유로 형벌성을 부정, 결국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 i) 청소년의 보호와 성문화의 최소한도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ii) 신상정보를 공개함으

로서 일반 성인에게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상식적인 것으로, 비록 미국의 Megan's law 와 같은 구체적 정보제공도 없어 범죄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청소년 성매수행위 등의 심각성을 계도하는 보다 일반적 차원의 범죄예방효과 등은 긍정할 수 있어, 각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고, iii) 신상공개 외에 성범죄에 대한 특수한 교정교육이나 사회문화풍조의 근본적 개선 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비현실적 대처방안인 반면, 부당한 공개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부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iv) 먼저 경찰 등에 신상정보를 등록 후, 필요한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역시 그 경우에도 정보공개는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가 현행 제도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판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v) (성)범죄자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통해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일반인에 비하여 더욱 제한적임은 필연적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소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우월적으로 판단될 수 없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결국,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개대상인 성범죄보다 불법성이 강한 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나 청소년 대상 범죄 가운데서도 청소년 성매수의 장소제공,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제기된 ③ 평등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독특한 사정을 고려하고,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행위의 불법성을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기본권제한 여지는 더 크고, 공개정보는 이미 수사, 형사재판과정을 통해 공개되고, 동법의 입법의도가 공개대상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야기할 의도만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라 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④ 기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원칙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명령 등에 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위임입법한계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각기, 신상정보의 공개는 근본적으로 처벌이 아니고, 동 공개결정을 주관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며, 공개결정과정

에 의견진술 및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하위명령 등에 위임된 사항은(공개시기, 절차, 횟수, 기간 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본질적 부분이 아니며, 이미 그 대강을 동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바탕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재판소 합헌의견을 위에서 살펴본 미연방대법원판례와 비교하면, 상당부분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합헌의견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2. 憲法裁判所의 多數的 違憲意見에 대한 檢討

헌법재판소가 기존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합헌 대 위헌의견이 4:5로 위헌판단의 정족수 미달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형 Megan’s law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를 우리에게 앞서 활용하고 있는 영미 등과 비교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특징도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은 ① 이중처벌금지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제도의 성격을 형벌(처벌)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³⁾ 문제는 형벌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에 형벌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i) 형법 제41조에 해당여부(형식적 기준) 외에, ii) 법률의 입법목적과 공개내용 및 유죄판결과의 관계(실질적 기준)를 살펴보되, 아울러,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범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의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여, 미연방대법원의 intent and effects test 및 Martinez-Mendoza factors와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연방대법원도 형벌성 부정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Megan’s law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33) 헌법재판소 2003.6.26선고 2002헌가14결정,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중, 재판관 김경일의 합헌의견,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특징을 고려한다면 타당성이 긍정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상습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폭력적 성범죄자의 특성에 착안하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관찰 등에 의한 범죄예방효과와 재범 시, 신속한 용의자선정, 신원확인 등에의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에 등록(registration)을 필두로(따라서, 당연히, 사진, 지문, DNA type profiling 등도 필요할 것이며, 등록정보의 갱신도 요구된다), 이후 등록된 정보의 일부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공개(notification)하는 형태로 제도가 형성, 발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한국은 경찰 등 1차 적인 범죄예방활동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등록절차는 없이, 단지 처음부터 공개를 염두에 둔 형태의 절차로서, 공개기간도 6개월 이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나 상습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정형이 부과된 경우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며,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도 잠재적 위협요소를 지역주민들이 인식, 이에 유의하게끔 하는 정보제공 보다는 단순히 공개대상자의 창피주기에 치우친 결과를 야기, 결국 범죄예방효과보다는 공개대상자의 privacy를 심각히 훼손하고, 취업, 안정적인 가정생활 등에 부수적 제한효과를 넘어서 사실상 주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점이 긍정될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형벌성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³⁴⁾ 이러한 의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³⁵⁾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위헌의견 공히,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성의 긍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³⁶⁾ 위에서 언

34) 한국에서의 신상공개에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를 종합한 것으로, “청소년보호 현황과 대책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1, 30-38면.

35) 헌법재판소 위헌의견은 ① 입법목적의 불분명성, ② 공개기간, 방법,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예방효과가 기대되기 어렵고, ③ 수치심의 야기 등 공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나아가 그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물질적 충격 및 ④ 신상정보의 공개를 수용하는 사회의 일반적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따라서, 이중처벌금지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36) 헌법재판소 2003.6.26선고 2002헌가14결정,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신상공개는 이미 형사처벌된 범죄행위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자의 행위요건이 없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행정제재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상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방지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그것도 게다가 정보제공보다는 주로 징벌 및 위하의 효과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이 형벌과 상당히 중복된다”.

급하였듯이 비록 Ulsery사건 이후, 제한적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위험(double jeopardy)금지원칙은 문제되는 법적 제재수단 등이 형벌이 아닌 민사적 제재(civil sanction)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미연방대법원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대륙의 일사부재리원칙 외에 동일하게 로마법에 연원을 둔 영미의 이중위험금지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헌법 제13조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의 ‘처벌(=형벌)’을 개념에 집착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헌법재판소도 본 결정에 앞서 건축범위반 사례로 벌금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형벌 외에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의 부과도 이중처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³⁷⁾

한편,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합헌의견은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 성범죄자의 인격권, privacy 및 공개대상 정보가 이미 판결문 등을 통해 공지된 공공기록적 성격임을 전제로,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청소년의 성보호 및 최소한의 사회적 성도덕, 건전성의 유지라는 입법목적, 신상정보의 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수행위 등은 위하 받아 제약·예방될 수 있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정인력, 시설의 부족 및 사회문화적 개선책은 비용·시간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성범죄예방과 그에 의한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은 신상정보의 대중적 공개보다는 오히려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의한 등록, 관리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대중적인 신상자료의 공개가 과연 어느 정도 청소년 대

37) 헌법재판소 1994.6.30선고 92헌바38결정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상 성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는지 실증적 검토가 시도된 바도 없다. 헌법재판소 합헌 의견은 범죄예방효과의 기대를 단순히 “상식적” 문제로 파악, 대폭 축소된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privacy와 형량을 하고 있다.³⁸⁾

마지막으로, ③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방식은 discretionary notification system을 취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재량적 개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충분한 고지 및 청문기회의 부여라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개대상자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자 간의 평등성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미연방대법원이 판단한 Connecticut주 및 Alaska주의 Megan’s law는 compulsory notification system이고, 상고이유로 평등원칙의 위배여부가 제기된 바도 없으므로, 이 문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Souter 대법관이 보충의견으로 평등원칙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 Megan’s law는 공개대상자를 선정함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9인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내부규칙으로 정한 사전 채점표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점수를 부여, 60점 이상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통지하면, 공개대상자는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재심사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최종 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행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합헌의견은 불합리한 공개결정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절차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립적 심사위원의 구성여부, 심사과정에서의 공개대상자의 출석, 반론기회부여 등을 고려하면, 과연 이를 불합리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절차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합헌의

38) 헌법재판소 2003.6.26선고 2002헌가14결정,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형사처벌 후에 신상공개까지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더 범죄억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상공개는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당해 범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파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범죄심리학적 분석도 있거니와, 실제로 법 시행 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신상공개가 실시되었지만 성범죄율이 감소하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난 제4회 신상공개에서는 제2회 및 제3회 신상공개 당시 명단에 들었던 4명이 다시 공개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바, 이 역시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범죄억지 효과가 매우 회의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3회 공개 이후, 강간, 성매수 알선 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강제추행, 성매수행위는 증가를 보임으로, 통계적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범죄예방효과는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http://www.youth.go.kr/notice/newsstory_view.asp(2003.12.19).

건에 따르면, 부수적 효과일 뿐이라고 지칭되긴 하지만, 공개대상자가 받게 될 사실상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진 않을까?

IV. 改正案의 特徵에 대한 檢討 : 問題點의 指摘과 補完의 必要性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Megan's Law의 문제점으로 등록 및 공개제도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사후입법금지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이나, 평등원칙이나 privacy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같은 실체적 적법절차원칙(substantial due process)에의 위반, 재범의 위험성판단 등에 있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써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적법절차원칙(procedural due process)에의 위반과 같은 헌법적 판단문제 외에, ① 성범죄자의 재범률 및 이에 대하여 대응책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범죄예방에의) 실효성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증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② 등록 및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정확하게 갱신, 관리되지 못하는 예도 많다는 점, ③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체포율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성범죄자의 체포율을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재범에 대한 범죄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등록제도의 실효성은 역시 의문스럽다는 점, 나아가 ④ 공개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회적 재통합이나 재사회화를 본질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³⁹⁾ 이러한 지적은 한국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실제, 기존 신상 공개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의 논거로, 위와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기존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 단순히 계도문 형식의 기존 신상공개제도 유형 외에 세부신상정보의 공개제도 및 이를 위한 등록제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②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일정기간의 취업 제한규정의 설정에 있다고 하겠다.

39) Eileen K. Fry-Bowers, "Controversy and Consequence in California : Choosing between Children and the Constitution", Whittier Law Review 25. 899, Summer. 2004, pp. 906-915.

필자는 기존 대중공개(public notification) 및 능동적(active notification) 유형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언급하듯이,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한국형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는 90년대 후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원조교제”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청소년의 활용한 음란물의 범람현상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활용되던 Megan’s Law를 참조, 도입한 것으로, 성범죄의 취약집단인 청소년을 보호를 목적으로 종래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에 의한 충분치 못한 범죄억제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된 새로운 범죄억제책으로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채택한 것으로,⁴⁰⁾ 그 입법목적은 미국의 Megan’s law와 유사하지만, 그 구조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⁴¹⁾ ①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절차(registration)가 없으며 따라서, 이후 신상정보 변동에 따른 관리(예, 주소지등의 변동 등)규정이 없다는 점(따라서, ‘성범죄자 공개제도’뿐으로, 한국의 경우는 단순히 성범죄자 공개제도라 지칭함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② 행정기관의(재범, 상습성) 위험도 판단 하에, 일률적 대중공개(public notification)를 취한 점(discretionary notification system), ③ 성범죄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신상정보를 수집, 공개하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성범죄자 공개제도는 성범죄에 대한 억제책(deterrence or prevention)으로 형벌, 보안처분과 동열의 기능을 수행함에 보다 주안을 둔다고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경찰 등에 의한 재범의 위험도 내지 상습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예방적 감시나 추적 및 수사시, 용의자 선정, 개인식별에 활용 등의 유용성은 제외된 한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성격과 기능이 사실상 형벌에 해당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프라버시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 그 위헌적 여지를 지적한 바 있다.

40) 헌법재판소 2003.6.26선고 2002헌가14결정, “입법부는 1999. 11.경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과 청소년간의 매매춘행위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메간법(Megan’s Law)으로 알려진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제와 같은 정보공개제도를 참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0. 2.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41) 심희기 교수도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미국 Megan’s law의 발상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로 지칭하고 있다. 심희기,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위헌성”, 법률신문 제3219호, 2003. 11. 10.

한편, 금번 개정안에는 세부공개대상자에 한정된 형태이지만, 등록제도(sex offender registration)를 설정하여, 대상 성범죄자에게 해당 정보의 등록 및 변동사항의 갱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상공개(notification)의 기능에 있어서, 범죄예방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상 유용성 확보라는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적 조치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형벌로써 강하게 기능하는 기존 제도문 방식의 일률적 대중공개제도(public notification)를 신상공개의 원칙적 형태로,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제기한 위헌성에 관한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기관인 정보위에 의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신상공개제도의 형벌적 기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점이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먼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① 공개에 앞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제도가 선행되고, 이 가운데 공개대상자가 그 위험도(재범의 위험성)의 객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로 법안이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② 기존의 제도문 방식의 일률적인 대중적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서 지향점으로 밝힌 범죄예방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 본질적 성격이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하고, ③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 지워진 성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은 형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의한 일률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도문 방식의 일률적 대중공개가 되지 않도록 제한적 장치(정보열람을 희망하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서버에 접속, 입력한 후에만 열람하도록 하거나, 등록기록을 보관장소에서 직접 열람하는 등의 방식)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제한된 범위에서의 수동형- passive type - 공개제도). 동시에, ④ 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선별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범 위험성(risk of recidivism)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소명기회가 아니라, 임상심리나 교정심리 전문가(expert)의 조력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반론을 충분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유효할 것이다. 또한,

아울러, 신설된 취업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청소년 및 아동 교육, 복지시설 등 한정된 범위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⑤ 범죄정보의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도 상반되며, ⑥ 국가기관이 취업제한을 강제함으로써,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의 형벌적 속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위헌시비를 강하게 야기할 수 있으며, ⑦ 공개된 범죄정보를 통해 범죄의 위험원을 사전에 감지, 예방함은 일반 시민의 판단 및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⁴²⁾ 이러한 점은 미연방대법원이 Alaska주의 Megan's Law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제시함에 있어서, 등록된 신상정보의 갱신의무부과나 공개가 피대상자의 주거이전나 직업선택이나 그 수행 등 여하한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제한하는 바는 없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에서도 그 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V. 結論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성범죄자 세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는, 기존의 계도문 형식의 신상공개제도에 비하여, 대상자에게 형벌제재외의 또 다른 형사제재를 가하거나, privacy 등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의하여, 재범의 예방, 상습적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원래의 입법목적에 대응한 수단으로서 유효한 정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선적 입법으로 평가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 계도문 방식의 신상공개제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며, 등록의무의 불이행시 역시 형사처벌 외에 인터넷 등에 의한 계도문 방식의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나아가, 범죄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의한 범죄예방이라는 취

42) 비교하여, 취업제한의 예는 아니지만, Iowa주 지방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학교나 아동교육,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2000 feet 이내 주거를 금지시키고 있는 Iowa주 Megan's Law에 대하여 이는 당해 성범죄자에게 위헌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강요한 점에서 위헌판단을 제시한 예가 있다. State v. Seering, - N.W.2d -, 2003 WL21738894, 9-10(Iowa 2003).

지와 달리, 비록 교육, 복지시설 등의 한정된 범위로 국한하기는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능동적 취업제한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강한 위헌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취업 등에 있어서 이른바 background test에 의한 취업제한 등이 사실상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형벌에 상응하는 제재로써, 이중처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다.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논문은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광범위한 논점을 실증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논의해 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인 성범죄 재범율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재범율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재범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재범의 발생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의하여 이는 결정된다;

- (1)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검거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 (2)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 (3) 유죄 확정 후 구금이 되는 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이들 중 만일 첫 번째 방안을 재범 규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재범율은 아마도 가장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안을 택하게 되면 기소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즉 plea bargain 등이 개입되어 재범율이 비교적 낮게 잡힐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흔히 재범율이 가장 낮게 책정될 듯하지만 선도조건부 가석방 시 규율위반으로 재수감되는 사례들까지를 포함하여 이 역시 꼭 순수 재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성범죄의 경우 순수하게 성과 관련된 범죄의 발생이 재범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1)의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http://www.csom.org/pubs/recidsexof.html>).

성범죄는 사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성폭행,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적합한 성적 접촉, 아동에 성적 추행 및 강간,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유형의 성범죄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재범율을 산출하려는 시도는 사실 매우 위험하다. 유형에 따라서는 일생에 단 한 번 발생하고는 재발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경찰에 검거되지 않는 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아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성범죄의 재범율에 대해 논의할 때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는 유독 신고율이 저조한, 그러니까 발생율이 현저하게 과소평가되는 범죄라는 사실이다. 미국 국립범죄피해자연구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1994, 1995, 1998년도에 시행된 피해자조사에서 전체 성범죄 중 단 32%만이 경찰에 의해 포착되었다고 한다. Marshall과 Barbaree (1990) 역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기록보다 약 2.4배 정도의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때 단지 법무부나 경찰의 공식적인 자료만 검토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모든 재범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재범의 관찰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이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범율 역시 증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역시 성립한다. 짧게는 출소 후 2-3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재범연구에 따라 장기종단적 관찰을 시행하는 시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최소 한 5년 정도의 관찰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은 들쭉날쭉하다. 이런 불일치하는 결과가 야기된 데에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범죄의 유형이나 성범죄자가 어떤 위험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범죄발생의 기저율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Grumfeld와 Noreik (1986)에 따르면 강간의 재범율은 약 10%이며 Gibbens, Soothill과 Way (1978)는 근친상간(대상이 다를 때)의 재범율은 약 4%라고 보고한 바 있다. Hanson과 Bussiere (1998)은 전체 성범죄의 재범율은 약 13%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각각의 성범죄의 발생 기저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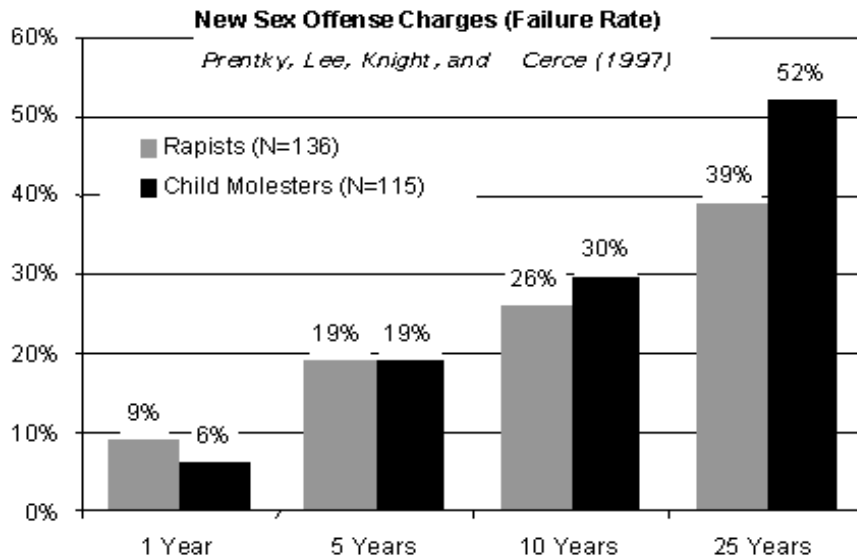


그림 1. 유형별 성범죄자들의 재범발생 실태

그러나 재범율에 대한 통계치가 가장 많이 변동되는 것으로 주요 원인은 재범에 대한 관찰기간이다. Prentky, Lee, Knight와 Cerce (1997)는 25년을 관찰하게 되면 일반 강간범의 약 반수인 52% 정도가 다시 재범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그림 1).

○ 국내 성폭력 범죄 발생 및 재범 현황

표 1. 강력범죄발생, 검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97	'98	'99	2000	'01	'02	'03
계	발생	294,569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2,369	497,066
	검거	244,007	290,160	349,653	385,087	396,885	400,359	399,119
살인	발생	784 (0.27%)	963 (0.29%)	976 (0.25%)	941 (0.18%)	1,051 (0.20%)	957 (0.20%)	998 (0.20%)
	검거	770	975	993	955	1,076	994	1,038
강도	발생	4,420 (1.5%)	5,516 (1.67%)	4,972 (1.30%)	5,461 (1.05%)	5,692 (1.07%)	5,906 (1.25%)	7,292 (1.47%)
	검거	4,027	5,316	4,885	4,524	4,670	5,957	7,165
강간	발생	5,627 (1.91%)	5,978 (1.81%)	6,359 (1.66%)	6,855 (1.32%)	6,751 (1.27%)	6,119 (1.30%)	6,531 (1.31%)
	검거	5,327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절도	발생	83,063 (28.2%)	91,438 (27.68%)	89,395 (23.28%)	173,876 (33.39%)	180,704 (33.95%)	175,457 (37.14%)	187,352 (37.69%)
	검거	41,427	57,393	60,315	68,564	78,777	125,593	114,920
폭력	발생	200,675 (68.12%)	226,409 (68.55%)	282,274 (73.51%)	333,630 (64.06%)	338,045 (63.51%)	283,930 (60.11%)	294,893 (59.33%)
	검거	192,456	220,731	277,296	304,905	306,341	262,293	270,097

주 :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자료: 경찰청(2004), 경찰백서.

표 2.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계		5,298	7,405	6,093	7,026	7,067	7,846	8,565	9,775	9,501	9,444	10,417
강간	(%)	5,298 (100)	6,173 (83.4)	4,844 (79.5)	5,580 (79.4)	5,627 (79.6)	5,978 (76.2)	6,359 (74.2)	6,855 (70.1)	6,751 (71.1)	6,119 (64.8)	6,531 (62.7)
성폭력 처벌법 위반	(%)	(0)	1,232 (16.6)	1,249 (20.5)	1,446 (20.6)	1,440 (20.4)	1,868 (23.8)	2,206 (25.8)	2,920 (29.9)	2,750 (28.9)	3,325 (35.2)	3,886 (37.3)

자료: 경찰청(2004), 경찰백서.

표 3. 중요 범죄의 재범 현황(2003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단위: 명
							폭력
검거인원	512,212	1,085	6,970	5,425	1,417	61,651	435,664
재범자	337,540	764	4,873	3,664	1,048	32,980	294,211
비율(%)	69.9	70.4	69.9	67.5	74.0	53.5	67.5

주 : 재범자는 동종 및 이종 범죄 재범을 합한 수치임.
 자료: 경찰청 (2004), 경찰백서.

표 4. 중요범죄 전과자 재범 기간

구분	전과자 총계	동 종 재 범								단위: 명
		소 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10,573 100%	1,525 14.4%	129 1.2%	120 1.1%	130 1.2%	207 2.0%	233 2.2%	181 1.7%	
살인	637 100%	66 10.4%	10 1.7%	4 0.6%	6 0.9%	10 1.6%	9 1.4%	7 1.1%	20 3.1%	
강도	3,106 100%	649 20.9%	50 1.6%	66 2.1%	62 2.1%	91 2.9%	91 2.9%	76 2.4%	213 6.9%	
방화	974 100%	80 8.2%	5 0.5%	6 0.6%	8 0.8%	13 1.3%	11 1.2%	9 0.9%	28 2.9%	
강간	5,856 100%	730 12.5%	64 1.1%	44 0.8%	54 0.9%	93 1.6%	122 2.1%	89 1.5%	264 4.5%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 법률위반	1,256 100%	148 11.8%	15 1.2%	11 0.9%	20 1.6%	25 2.0%	28 2.2%	15 1.2%	34 2.7%	

구분	이 종 재 범							
	소 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9,048 85.6%	352 3.3%	498 4.7%	716 6.8%	1,233 11.7%	1,398 13.2%	914 8.6%	3,937 37.2%
살인	571 89.6%	28 4.4%	25 3.9%	45 7.1%	61 9.5%	74 11.6%	65 10.2%	273 42.9%
강도	2,457 79.1%	120 3.9%	185 6.0%	250 8.0%	417 13.4%	417 13.4%	248 8.0%	820 26.4%
방화	894 91.8%	28 2.9%	62 6.4%	61 6.3%	102 10.5%	128 13.1%	80 8.2%	433 44.4%
강간	5,126 87.5%	176 3.0%	226 3.9%	360 6.1%	653 11.2%	779 13.3%	521 8.8%	2,411 41.2%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 법률위반	1,108 88.2%	31 2.5%	57 4.5%	66 5.3%	127 10.1%	163 13.0%	126 10.0%	538 42.8%

자료: 경찰청 (2004), 범죄분석.

표 5. 강간범죄 전과자 재범 동기

구분	계	이 욕								
		소계	생활비 마련	유혹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사치심	치부	기타		
강간	5,856 100%	541 9.2%	48 0.8%	80 1.4%	3 0.1%	9 0.2%	36 0.6%	365 6.1%		

구분	이 욕										
	사행심	보복	가정 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 불만	부주의	기타	미상	
강간	8 0.1%	17 0.3%	8 0.1%	296 5.1%	296 5.1%	1,842 31.5%	20 0.3%	84 1.4%	2,700 46.1%	44 0.8%	

표 6. 1996-2000년 가석방자 재입소율 현황

죄명	구분	가석방인원(%)	재입소자(%)	동일죄명 재입소자(%)	다른죄명 재입소자(%)
계		26,874(100%)	2,108(7.8)	917(3.4)	1,191(4.4)
절도 등		3,123(11.6)	744(23.8)	426(13.6)	318(10.2)
폭행·상해 등		3,496(13.0)	369(10.6)	168(4.8)	201(5.7)
강간 등		2,490(9.3)	181(7.3)	74(3.0)	107(4.3)
교통사고특례법 등		4,638(17.3)	200(4.3)	81(1.7)	119(2.6)
방화		151(0.6)	10(6.6)	1(0.7)	9(6.0)
문서 등 위조법		306(1.1)	22(7.2)	8(2.6)	14(4.6)
살인		1,688(6.3)	26(1.5)	4(0.2)	22(1.3)
강도 등		2,802(10.4)	198(7.1)	77(2.7)	121(4.3)
사기 등		3,450(12.8)	149(4.3)	48(1.4)	101(2.9)
횡령·배임		528(2.0)	20(3.8)	2(0.4)	18(3.4)
군무이탈		731(2.7)	4(0.5)	3(0.4)	1(0.1)
간통		423(1.6)	4(0.9)	0(0.0)	4(0.9)
기타		3,048(11.3)	181(5.9)	25(0.8)	156(5.1)

주 : 절도 등(절도, 주거침입, 장물), 폭행·상해 등(상해, 상해치사상, 폭행, 폭행치사상, 폭력행위 등), 강간 등(강제추행·동치사상, 강간·동치사상), 교통사고특례법 등(교통사고특례법, 도교법, 도주차량), 강도 등(강도·동치사상, 강도강간·동치사상), 사기 등(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자료: 법무부 교정국 제3차 가석방자 재입소율 조사자료.

표 7. 1996-2000년 가석방자 재입소율 중 성범죄자 죄명별 재입소율

가석방죄명	가석방인원	재입소죄명					
		계	절도 등	폭행 상해 등	강간 등	교통사고 특례법등	방화
강 간	2,490 100%	181 7.3%	27 1.1%	20 0.8%	74 3.0	10 0.4	0 0.0

문서등 위조범	살인	강도등	사기등	횡령배임	군무이탈	간통	기타
0 0.0%	6 0.2%	37 1.5%	2 0.1%	0 0.0%	3 0.1%	0 0.0%	2 0.1%

○ 국내 성범죄자 전과경력 사례

● 사례 1

1985. 2.18	강간치상	징 장5년-단3년
1987. 10.12	절도	벌금70만원
1988. 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벌금20만원
1989. 3.13	미성년자의제강간	징5년
1995. 2.15	강간치상	징1년6월
1997. 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징6월
1999.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벌100만원
2003. 10.16	성폭력범죄(강간치상등)	징4년

● 사례 2

1984. 6.8	강간치상	징2년6월
2000. 7.26	성폭력	징2년
2002. 5.26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징3년
2004. 5.14	성폭력범죄(강간치상)	징25년
		- 성폭력범죄 7회 이상

● 사례 3

1992. 9.25	절도	징8월 집유2년
1993. 11.9	강간치상	징4년
1999. 1.13	성폭력(미성년의제강간)	징4년
2001. 3.13	성폭력(13세미성년자강제강간)	징2년
2003. 2.26	성폭력(13세미성년자강제강간)	징2년

→ 국내의 경우에도 고질적인 성범죄 경력자 존재함.

○ 미국의 성범죄 재범율

성범죄의 재범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24,000명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61개의 재범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단지 13.4%만이 석방된지 3-4년 이내에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 Bussiere, 1998). 성범죄자들 중 약 12% 정도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치한범은 10%, 강간범들은 22% 정도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에 대한 재범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면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율은 암수범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보다 과소측정된 것이다. 약 20년간의 추적조사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30-40% 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nson, Steffy & Gauthier, 1993; Prentky, Lee, Knight & Cercer, 1997). 그러나 암수율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들의 전반적인 재범율은 평균적으로 비성범죄자들의 재범율보다는 높지 않다(Beck & Shipley, 1989).

○ 미국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들이 발생한 이후에 성범죄에 대한 등록 시스템 및 화학약품법 등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워싱턴 주는 성범죄자에 대한 판

결 이후의 civil commitment를 처음 제정한 주이다. 이 법의 제정 배경은 7세 소년에 대한 Earl Shriner 사건이다. 출소 후 2년이 지났던 때에 그는 소년의 성기를 절단하고 사망하도록 방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The Community Protection Act of 1990이 제정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civil commitment는 이 법의 일부로 규정되었다. 여기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Sexual Predator Law를 제정하였다.

뉴저지 주에서는 성범죄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Jesse Timmendequas가 7세 소녀인 Megan Kanka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뉴저지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석방된 후에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들이 뉴저지 주로 이사할 경우에는 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연방법에서는 현재 모든 주에 대하여 성범죄자들의 등록법(registration law)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에서 등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몇몇 주에서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mandatory chemical castration law)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성범죄자들 중 가석방 대상자들이나 감형에 의한 석방자들에 대하여 성충동을 감소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이 만기될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성범죄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없이 여론에 의하여 통과된 경향이 있었다(Winick & La Fond, 2003).

○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의 개관

미국의 Megan's Law는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일부이다. 즉, 메간법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지역사회에 대하여 통지(notification)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와 메간법, 지역사회통지제도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은 3단계에 걸친 연방입법을 통하여 마련되었는데, 웨터링법(Wetterling Act), 메간법(Megan's Law), 라이크너법(Pam Lychner Act)가 그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웨터링법. 웨터링법은(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994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이콥

웨터링 아동범죄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이다. 이 법은 주 정부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효과적인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웨터링 법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는 어던 범죄자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해야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 범죄자는 등록을 해야하고, 법집행 기관에 현재의 주소를 10년 동안 제공해야한다. 성폭력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은 최고 위험군으로 주정부에 보다 광범위한 등록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웨터링 법에서는 SVP를 평가해내는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주정부는 적절한 등록명부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정부는 대부분의 범죄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도로 그리고 성폭력 흉악범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혹은 매90일 마다 주소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주정부는 등록명부 정보를 유지해야하고, 법집행기관에 이를 배포해야한다. 넷째, 주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공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메간법. 메간법은(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996년에 입법된 법으로, 웨터링 법의 지역사회 통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원래의 웨터링 법은 주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정보의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메간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등록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구는 흔히 ‘강제적 지역사회 통지(mandatory community notification)’ 제도라고 불린다. 메간법의 준수 기간은 웨터링 법과 같으며, 전체 웨터링 법의 일부분을 수정한 개정법이다.

라이크너법. 라이크너법은(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996년 10월에 제정된 팜 라이크너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 법(Pam Lychner Sex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 of 1996)이다. 라이크너 법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주 및 지역단위의 정부에 대한 수많은 의무를 부여하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방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FBI에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의 소재와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FBI가 최소한도의 충분한 성범죄자 등록 프로그램이 없는 주에 대한 성범죄자의 등록을 직접 관장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라이크너법의 입법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등록정보의 확보를 요건으로 하는 웨터링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웨터링 법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주정부에 10년간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라이크너 법에서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종신토록 등록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성폭력흉악범과 중범죄자, 상습범이 포함된다.

○ 각주의 성범죄자 분류 방식과 절차

미국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법을 보면, 성범죄자 분류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적 방식과 특정 기관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강제적 방식

강제적 방식(compulsory approach)은 법으로 정한 아동 상대 내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를 등록 및 통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 범죄자의 재범위험과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2001년 현재 19개주(알라바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에서 채택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임의적 방식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나머지의 주들이 취하고 있는 임의적 방식은 등록 및 분류-통지의 결정에 관한 재량의 정도를 다양화하는 시행방식이다. 임의적 방식에 의하여 성범죄자들을 위험성 및 상습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보공개 정도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이다. 특히 성폭력 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 상습적 성범죄자 등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정보공개 및 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제정된 Sexually Violent Predator(SVP) Law의 목적은 (1) 성범죄자들 중 소수집반에 대한 제한적 해결방안의 제시 (2) 기존의 정기형 선고 시스템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권한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의 제시이다. SVP Law는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로 2002년에는 16개 주(Washington, Arizona, California, Florida, Illinois, Iowa, Kansas, Massachusetts, Minnesota, Missouri, New Jersey, North Dakota, South Californi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의 선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Winick & La Fond, 2003).

SVP Law의 내용

워싱턴 주에서는 SVP로 확인된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의 치료 위탁을 명한다. 워싱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SVP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성폭력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고소되었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정신이상이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의 유형은 강제적 강간, 법에 위반되는 강간, 성적인 동기를 갖는 기타 행동 및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외설스러운 행위 등이 포함된다. SVP의 대상자로는 첫째, 형이 만기될 예정에 있는 유죄선고된 성폭력 범죄자, 둘째, 성폭력 범죄로 유죄선고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형이 만기될 예정인 소년사범, 셋째, 재판받을 능력이 없거나 심신 상실 등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자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신건강 시설에서 SVP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Massachusetts의 경우 교정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워싱턴 주의 경우 별도의 행정기관이 설립되어있다. 모든 치료는 자발적인 지원자에게 제공되며, 워싱턴의 경우 SVP로 청원서가 제출된 수형자 중 2/3만이 동의하고 있다(Winick & La Fond, 2003).

주에 따른 SVP 선별 기준

연령. SVP 법률을 가지고 있는 16개 중 1/3 정도가 청소년 성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들에서는 18세 이상의 청소년 혹은 성인 범죄자들만

을 대상으로 한다.

범죄 유형.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주들은 한 건의 범죄(single offense)도 대상으로 한다.

정신장애 진단 및 정신 상태. 모든 주들이 정신이상 혹은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정신 상태라는 증거를 요구한다.

결정 기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likely to engage)'이며, '재범의 의지가 있는 경우(will engage)' 혹은 '재범을 저지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substantially probable that the person will engage)'를 결정기준으로 한다.

책임 기관. 14개 주에서는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시설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교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설 환경. 5개 주들(Arizona, California, Florida, Minnesota, North Dakota)은 병원 시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Massachusetts에서는 교정시설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경비 시설(secure facility)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6개 주들에서는 SVP 범죄자들을 다른 환자나 수형자들과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다.

SVP 수용을 위한 배심재판 여부. 12개 주들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행하고 있으며, 10개주에서는 만장일치의 배심 평결을 요구하고 있다.

구금 기간. 캘리포니아에서, SVP 법률에 의한 구금은 2년 동안이며, 추가적인 청원이나 재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 외의 주들에서는 부정기형을 부과한다.

SVP를 선별하는 선별 절차

성범죄자의 검토. 몇몇 주들에서는 성범죄로 유죄선고받은 성범죄자들 중 석방 예정인 수형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구조화된 위험성 평가 도구들이 선별을 위해 사용된다. 위험성 평가 후에 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선별자의 적격성 여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개인적인 경력이나 자격요건 보다는 특정 기관의 대표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명의 임상가(자격이 있는 심리학자 및 정신의학자)가 대상 수형자가 SVP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들

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다. 반면 Missouri 주에서는 각 군(county)을 대표하는 5명의 검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원서의 제출 결정. 많은 주들이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에게 청원서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VP의 위험성 평가 도구

표 8은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도구들이다. 처음의 3가지 척도는 일반범죄와 폭력범죄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며, 나머지 4가지 척도는 성범죄의 재범 예측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

표 8. 성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도구

척도	항목 수	항목의 유형	예측된 재범 유형	예측 정확성	재검증 정확성
VRAG	12	PCL-R, 연령, 부모와의 분리, 알콜문제, 아동기 부적응, 범죄전력, 결혼 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조건부 석방의 실패 여부	폭력범죄 일반범죄	높음	높음
SORAG	14	VRAG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 음경측정 평가	폭력범죄 성범죄	높음 중간	낮음
PCL-R	20	shallow affect, 타인의존적인 생활방식, 범죄 전력의 다양성, 충동성, 양심의 가책(연민)의 결여, 속임수적인 성향, 입심이 좋은 성향, 천박한(superficial) 성향	일반범죄 폭력범죄	중간 중간	높음
MnSOST	21	이전의 성범죄 전력, 조건부 석방의 위반, 강제력의 사용, 피해자의 연령, 범죄자와 관련없는 피해자 선택, 청소년기 비행, 약물남용, 직업, 치료의 중도탈락여부, 연령	성범죄	중간	중간
MnSOST-R	16	MnSOST와 유사한 항목(경험적으로 검증된 가중치 적용)	성범죄	높음	낮음
RRASOR	4	이전의 성범죄 전력, 남성 피해자의 선택, 범죄자와 관련없는 피해자의 선택, 연령	성범죄	중간	중간
Static-99	10	RRASOR 항목 포함, 비성폭력 범죄 전력, 신고받은 총 구금일, 자신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선택, 미혼 여부, 대물범죄 전력	성범죄 폭력범죄	중간 중간	중간

주 :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SORAG (Sex Offender Risk Appraisal Guide; Quinsey et al., 1998),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 MnSOST-R(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Epperson, Kaul & Hesselton, 2000), MnSOST(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Epperson, Kaul & Huot, 1995;Winick & LaFond, 2003), RRASOR(Rapid Risk Assessment for Sex Offence Recidivism; Hanson, 1997), Static-99; Hanson & Thornton, 1999)

자료: Winick & LaFond, 2003.

다. 표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예측의 정확성에 있어서 중간정도는 상관계수 .25에서.30의 범위에 해당되며, 높은 정확성은 .35에서 .45의 범위에 해당된다. 재검증 정확성의 경우, 높은 정도는 몇 명의 연구 팀에 의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일치된 결과가 높게 나온 경우이고, 중간 정도는 최소한 2팀의 다른 위험성 평가 결과가 일치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매간법, 성폭력흉악법에관한법의 비교

표 9.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는 법률 비교

	취지	대상 및 선별과정	내용	기간	신상공개 시점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 법률	청소년대상성범죄의 확산(원조교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신상을 공개하여 일반예방효과를 얻고자함.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 단 공개대상범죄를 범한자가 청소년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게시판에 6월간 게재 및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
매간법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를 통한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취지임.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 범죄자가 출옥하거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될 경우 등록 및 성폭력 흉악범의 경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함.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의 범위, 등록정보가 공개되는 범죄의 범위, 정보가 제공되는 기관에 대한 범위, 공개되는 정보의 범이 등이 주에 따라 다양함.	10년간 등록 및 주기적 주소 확인 및 성폭력 흉악범(SVP)은 더 이상 성폭력 흉악범이 아니라는 위험성 평가를 받고, 위험성이 없다는 결정이 없을 시에는 평생 동안 등록해야함.	석방 후 지역사회로 유일될 시기
성폭력흉악법에관한법	성범죄자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선별하여 치료를 제공.	선별위원회의 평가(risk assessment)를 거쳐 SVP로 확인된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성범죄자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SVP로 확인된 자를 선별하여 치료위탁.	부정기형 (위험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석방 후 지역사회로 유일될 시기

○ 성범죄자의 특성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고,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등 초기 대인관계에서부터 장애가 있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감도 부족하다. 부모를 모두 적대시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상호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반사회적, 병리학적인 생활방식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 타인에 대한 감정이 입 및 자기 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특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분노를 혐오로, 두려움을 놀라움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와 또래 집단이 부족하며, 주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빈약하고 사회관계가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한편, 성범죄자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 상황 등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핑계 거리를 제공하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성관련 일탈행위를 지속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선영·양종희·이수정, 2004).

○ 성범죄자의 동기심리학적 유형

성폭력의 유형을 행동 내면에 있는 동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분노형, 권력형, 가학성, 기회주의적 성범죄자가 이에 해당한다. 분노형 성범죄자들은 신체 학대를 목적으로 희생자를 공격하고 특정 여성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보고한다.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성적인 범지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로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분노를 풀려고 시도하는 이들이다. 가학성 성범죄자는 분노와 권력이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병리학적 형태이다. 기회주의적 성범죄자는 처음부터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산 범죄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으

로 인해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Burgess & Holmstorm, 1974; Groth, 1977).

표 10. 성범죄자의 동기심리학적 유형

분류	특징
분노형 성범죄자	폭력적, 신체학대를 목적으로 희생자들을 공격
권력형 성범죄자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성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유형
가학성 성범죄자	분노와 권력이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병리학적 형태
기회주의적 성범죄자	범죄 행위 과정 중에 나타난 성적 충동으로 강간 행위

○ 경험적 연구를 통한 성범죄자의 주요 심리특성

성적 환상. 가학성 범죄의 동기원으로 환상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번 밝혀진 바 있다. 가학적 범죄 시 그들의 마음 상태는 환상 상태에 놓여있고, 한번 성적 살인을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쇄살인(성적)을 한 집단은 환상과 좀더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었다. 성적 환상과 관련된 연구 중 하나는 ‘왜 가학적 범죄자, 그들의 환상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환상을 지닌 성격 장애자들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범죄자의 나르시시틱하고 반사회적 특성들을 함께 설명해낸다. 또 다른 접근방법은 과거력과 행동적 변인을 찾아내는 것인데, 성적 환상은 부모와 분리되었던 과거력, 신체적·성 학대와 가학적 범죄자들에게 있는 성도착적 행동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환상은 틀림없이 가학성 범죄자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성적 환상 그 자체가 성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환상의 전이, 단계적인 행동 실행이나 범죄가 고무된 불분명한 고리 등이 함께 작용되어야 최종적인 가학적 성범죄가 형성된다(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고립. 성적 살인범과 강간범의 비교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결과는 성적 살인범들

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강간범에 비하여 고립감의 정도, 사회 및 정서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MacCulloch 등(1983)은 유년기에 가학적 범죄자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성적 가학자들은 대체로 나르시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Boss(1949)도 가학 변태 성욕자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서공감능력의 결핍. 정서공감력에서의 비정상성은 성적 공격행동 시 다른 행동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만약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고통 상황이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성적인 만남이나 공격은 살인을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가될 것이다(Grubin, Parson & Hopkins, 1999;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 연구

성범죄 재범에 대한 추적조사에서는 재범에서의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추적 연구들은 특정한 특징들(예를 들어, 결혼여부)을 가진 범죄자의 재범율과 다른 특징들을 가진(예를 들어, 미혼여부) 범죄자의 재범율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 범죄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의 비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과 비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동일하다. 두 집단 모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이전의 범죄경력, 청소년 비행, 반사회적 성격, 연령, 인종 및 약물남용이었다(Gendreau, Little & Goggin, 1996; Hanson & Bussiere, 1998).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범죄의 예측인자들은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표 8은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이다(Hanson & Bussiere, 1998).

표 11. 성범죄 재범의 예측인자

위험 요소	r	n(k)
성적 일탈		
아동에 대한 PPG 성적 흥미	.32	4,853(7)
일탈적 성적 선호	.22	570(5)
이전의 성범죄 경력	.19	11,294(29)
일부 낯선 피해자	.15	465(4)
저연령에서의 시작	.12	919(4)
무관계 피해자	.11	6,889(21)
소년 피해자	.11	10,294(19)
다양한 성범죄 경력	.10	6,011(5)
범죄 경력/생활양식		
반사회적 성격	.14	811(6)
이전 범죄	.13	8,683(20)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령	.13	6,969(21)
미혼	.11	2,850(8)
치료 전력		
치료 중도탈락	.17	806(6)

주 : r은 Hanson & Bussiere(1998)에서 산출된 평균 상관계수이며, k는 연구의 수 그리고 n은 전체 사례수이다. PPG는 penile plethysmography를 의미한다.

자료: Hanson, 2000; Winick & La Fond, 2003.

많은 성범죄자들 특히 강간범죄자들은 재범에 있어서 성범죄만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동치한범들은 재범을 저지를 때 다른 폭력범죄보다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는데 반하여, 강간범들은 성범죄만큼이나 비성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두 집단 모두 비폭력적인 혹은 비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성범죄자들 중 일부 범죄자들의 경우 석방된 후 새로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risbie & Dondis(1965)는 성범죄를 저지른 70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의 36%가 석방된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Quinsey(1986)의 아동치한범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해주는 3개의 주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의 성범죄, 남성 피해자의 선택, 그리고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선택이 그것이다. Frisbie & Dondis(1965)는 1,035명의 이성애자, 428명의 동성애자, 그리고 49명의 양성애자인 아동치한범들에 대한 추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위의 3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재범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병질자(sociopath)로 진단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더욱 일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해내었다. Rice, Harris and Quinsey(1990)는 54명의 강간범죄자 집단에 대한 성범죄 및 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적 기간은 46개월이었다. 재범의 예측인자에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폭력범죄 재범과 관련된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포함되었는데, 정신병질, 과거의 범죄경력, 연령, 결혼여부 등이 포함되었고, 성범죄의 예측인자로는 특히 과거의 범죄경력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3%가 폭력범죄로 재범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28%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으로는 이전의 폭력범죄 전과, 성범죄 전과, phallometric deviance가 포함되었다.

Hanson & Bussiere(1998)는 성범죄의 재범 예측인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들은 87개의 연구를 발견하였고, 1989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었다. 사례수는 평균적으로 198명이었으며, 4년 정도의 추적조사를 수행한 연구들이었다. 총 28,972명의 성범죄자들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해주는 주요 요인에는 일탈적인 성적 기호와 과거의 범죄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음경측정법에 의해 측정된 일탈적인 성적 기호였다.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이전의 성범죄 경력과 성범죄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 주요 예측인자는 연령과 미혼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폭력범죄를 예측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덜 중요하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예측 요인에는 남성 피해자의 선택과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정신분석적 치료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 최근까지 주로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방법은 집단 및 개별 심리치료기법이었다. Frisbie(1969), Frisbie & Dondis(1965)는 중구급급 경비가 이루어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범죄자들 중 치료를 받은 정신병질을 가진 성범죄자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을 비교하여 정신역동 치료기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치료가 끝나고 풀려난 후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의 수는 치료를 받은 집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치료를 받은 집단이 이후에 성범죄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지만 동종의 범죄로 재범을 저지른 비율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정신역동 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재범율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Winick & LaFond, 2003).

외과적 거세와 약물치료.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아니지만, 외과적 거세(생식선(gonad)의 외과적 제거)는 유럽에서 성 충동과 성적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거세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거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율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효과도 범죄자의 자발성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한다. 즉, 강요에 의해서 거세를 받은 범죄자는 불법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근육 증강제와 같은 호르몬을 시술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거세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불법적으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거세를 하는 것이 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한편, 세로토닌계 약물치료가 최근 들어 거세보다 더욱 인기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세로토닌계 약물을 포함하여 antiandrogen 약물들(cyproterone,

acetate,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 leuprolide acetate, medroxy progesterone acetate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티안드로겐 약물은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몇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남성들이 이 약물들을 먹는 것을 기피하기도 한다. 즉, 체중 증가, 피로감 증가, 두통, 우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ick & LaFond, 2003).

인지행동 치료기법. 성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적 치료 기법은 주로 일탈적인 성적 선호를 수정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일탈적 성적 자극이나 환상으로 인한 성적 각성에 기피적인 사건을 연합시키는 혐오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분노조절, 성교육, 상담, 가족 치료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혹은 피해자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향상도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들은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치료들이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기도 전에 중간에 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의 변화들에 대한 평가 또한 거의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래와의 문제, 가족 갈등, 학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되었다. 비록 8명의 집단에 대한 연구였지만, 치료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재범율은 치료를 받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강간범과 아동치한범들을 대상으로 한 Hildebran & Pithers(1992)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재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inick & LaFond, 2003).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신상공개 및 세부정보 공개의 문제점

- 법률의 목적상의 문제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이 메간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관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이기도 하지만, 메간법의 법률적 취지, 범위, 대상 선별 등과 비교해볼 때, 메간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다른 취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성폭행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기본적 취지에 대하여서는 간과하고, 신상공개라는 외형적인 제도만을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메간법은 성범죄의 양적 발생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상습범들이 초래하는 재범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역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든 주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등록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일반예방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재범의 위험성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 및 등록이라는 제도적 측면만 동일할 뿐 메간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신상공개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제도의 운영이 일치되는지 조차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 신상공개로 인한 일반예방효과가 있는가.

신상공개가 시행된 것이 불과 몇 년이라는 점이 신상공개의 일반예방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게 하는 점도 있겠지만,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더라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현재 신상공개의 방식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재 그리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 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관에 1월간 게시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정작 성범죄자의 피해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부중앙청사 및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찾아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겠지만, 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제지력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신상공개의 대상자와 대상

자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 커져서 공개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처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듯 하다.

-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선별 기준은 합리적인가.

현재 신상공개 대상자 선별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주요 기준은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죄질 등 10점으로 대상자의 위험성, 과거의 범죄력 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것은 대상자에 대한 특별예방의 측면에서도 미래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예방보다는 본 범죄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근거가 된다. 범죄의 내용에 따른 형량과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은 다른 특성을 갖는 요인들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신상공개 선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SVP 적용기준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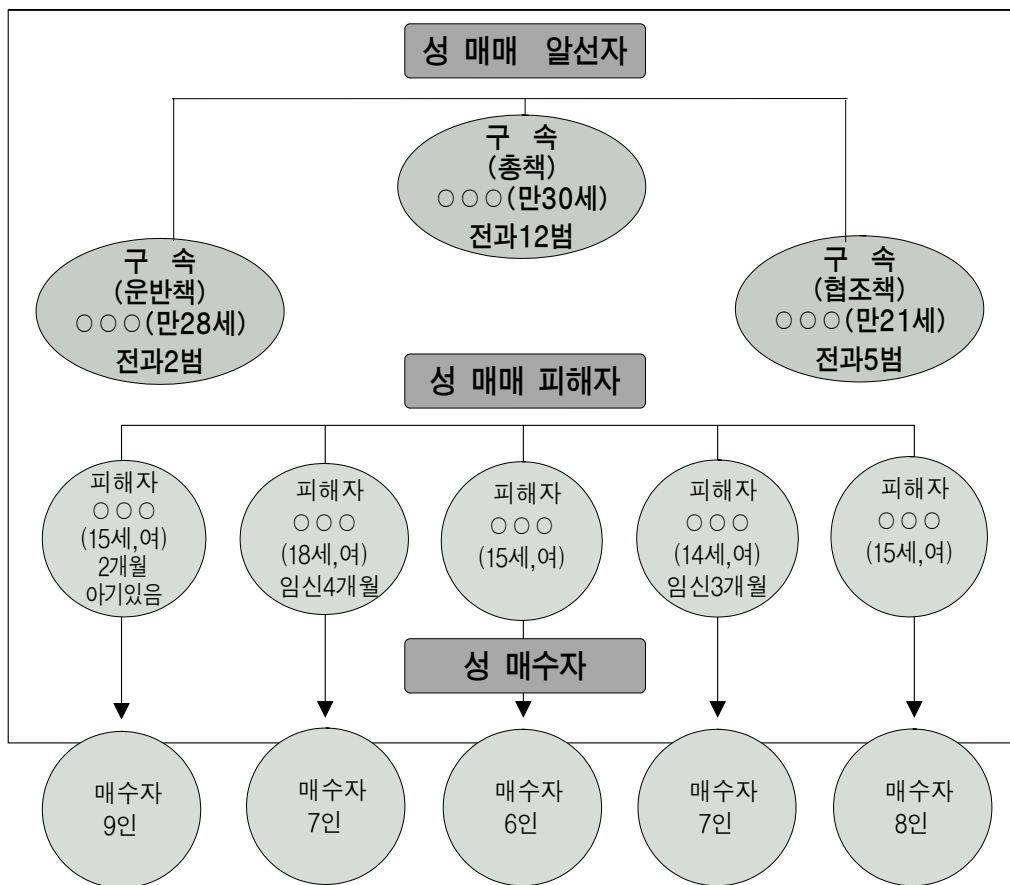
-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신상공개 범위의 부과는 합당한 것인가.

현재의 선별 기준에 의하여 보더라도 본 범의 내용, 죄질, 범행 동기에 따라 다양한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신상공개의 범위는 기간도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6개월 개제 및 정부기관 1개월 개제로 매우 획일적으로 신상공개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신상공개의 기간, 공개 기관의 범위 등도 다양하게 규정되어야 신상공개제도에 의한 일반 및 특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상공개 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상공개 제도 이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감소하였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시각에서는 오히려 신상공개로 인하여 청소년성매수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수요 욕구가 더욱 커진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성매수 방식이 점차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부정적 측면 중 한 가지이다. 이것은 청소년성범죄의 피해자로 간주되었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청소년

년 성범죄의 여러 양상들에 대해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신상공개 혹은 세부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보다는 융통성 있고 단계화된 청소년 성범죄자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 검찰청 (2004). 범죄분석.
- 경찰청 (2004). 경찰백서.
- 이수정,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3), 99-126.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 Beck, A. J. & Shipley, B. E. (1989).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 (U.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Epperson, D. L., Kaul J. D. & Hesselton, D. (2000). 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MnSOST-R); Development, Performance and Recommended Risk Level Cut Scores. St. Paul, MN; Department of Corrections.
- Frisbie, L. V., & Dondis, E. H. (1965). Recidivism among treated sex offenders, California Mental Health Research Monograph, Sacramento: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Mental Hygiene.
- Hanson, R. K. (1997). The Development of a Brief actuarial Risk Scale for Sexual Offense Recidivism (Document No. 1997-04). Ottawa, Ontario, Canada; Solicitor General Canada.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nson, R. K., Steffy, R. A. & Gauthier, R. (1993). Long-Term Recidivism of Child Mole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46-652.
- Hanson, R. K., Thornton, D. (1999). Static-99; Improving Actuarial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1999-02. Ottawa, Ontario, Canad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

- Prentky, R. A., Lee, A. F. S., Knight, R. A. & Cerce, D. (1997). Recidivism Rates among Child Molesters and Rapists; A Methodological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1, 635-659.
- Quinsey, V. L. (1986). Men who have sex with children. In D. N. Weisstub(Ed.), *Law and Mental Health: International Perspectives*(Vol. 2, pp. 140-172). New York: Pergamon.
- Quinsey, V. L.,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ce, M. E., Harris, G. T. & Quinsey, V. L. (1990). A Followup of Rapists Assessed in a Maximum Security Psychiatric Fac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435-448.
- Winick, Bruce J. & La Fond, John Q. (2003).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Washington, DC;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 용 탁 과장 (한국갱생보호공단)

性犯罪者の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 용 탁 과장 (한국갱생보호공단)

I. 갱생보호사업 개요

- 갱생보호는 감호·교정시설 등에서 출소자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 형사정책 사업임.
- 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효율적 범죄예방활동 전개 등의 갱생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임.
- 갱생보호공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일반 출소자 보호 시설인 12개 지부와 (여성)청소년전문생활관 3개, 취업전문생활관 3개, 여성생활관 1개 등 7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II. 갱생보호대상자 현황

□ 출소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현황

○ 출소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출 소 자	갱생보호대상자	비 고
계	181,831	108,020	
2000	61,346	36,149	
2001	61,921	35,882	
2002	58,564	35,989	

○ 보호대상자 현황(한국갱생보호공단 사업기준)

(단위 : 명)

연도별	보호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전 면담	사후 관리	재사회 화교육	긴급 원호	기타자 립지원	비고
2003년도	39,796	2,495	1,491	3,328	18,994	4,423	2,304	·	6,761	

○ 보호대상자 중 성범죄자 현황(한국갱생보호공단 사업기준)

(단위 : 명)

연도별	보호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긴급 원호	비고	
2004년도 (10월)	243	60	65	111	7		

○ 청소년 보호대상자 현황(2003년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업기준)

(단위 : 명)

출장소	보호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전 면담	사후 관리	재사회 화교육	기타자 립지원	비고	
은평출장소 (남자청소년)	493	50	18	16	214	32	38	125		
송파출장소 (여성 청소년)	382	47	17	19	108	30	35	126		

Ⅲ.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갱생보호공단의 의견

□ 갱생보호 처우에서 나타나는 사례

-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대상자 중에는 가해경험자와 피해경험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갱생보호처우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 현상적으로는 절도나 폭력등의 가해자이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80~90%) 성매매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삼촌”이라 지칭되는 사람들과의 교제 경험,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이모”라 지칭되는 사람들과의 교제 경험이 있음(※ **남자 청소년의 경우 호스트바 출입 및 종사경험 포함**)
- 갱생보호는 본질적으로 출소후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中間寄着地(Halfway back)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그 피해자가 인친척이거나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이웃인 경우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에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갱생보호공단에서의 보호는 매우 긴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물질적인 피해로 나타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상 등 原狀回復을 통하여 지역사회공동체와 관계를 회복(Restitution)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나 강간범(Rapist) 등 성범죄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서 회복적 관계(Restorative Justice)의 실현이 어려워 지역사회와 융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성범죄관련자라는 연유로 지역사회와 융화되지 못하는 출소자를 우리공단에서 마저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출소자가 犯罪浪人化하여 오히려 사

회적 위험성이 더욱 큰 Case로 악화될 수 있음

(※ 갱생보호 실시동안의 재범률은 1~3%이며 갱생보호 실시 이후 4년 이내 재범률은 25%미만에 그치고 있어 출소자 평균재범률 60%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반시민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안전한 삶을 원하며 범죄자들로부터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사회가 안전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출소자시설은 자신의 지역공동체에 공존하기를 원치 않는 모순된 심리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공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갱생보호대상자들은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가족관계의 불화 및 지역사회와 융합되지 못하는 사유로 공단주소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전체 숙식보호대상자의 30·40% 이상)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0조의 2에서와 같이 시군구 거주지가 나타날 경우 한국갱생보호공단의 19개 생활관 소재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성폭력 사범 보호시설로 낙인되어 혐오·기피시설로 오인받을 우려 있음
- 갱생보호대상자들은 평소에도 우리사회에서 자신들이 소외된 존재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공단 시설마저 지역사회의 혐오시설화 할 경우 출입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 출소자 재범 억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스스로의 도덕률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출소자들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소외된 구석으로 몰아 재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온상(Hot bed)을 제공하는 것임
- 또한 갱생보호사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서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갱생보호사업은 존재할 수 없음

- 그러한 경우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바라는 여타의 갱생보호대상자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

IV. 結語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이되 또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갱생보호와 재사회화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및 Mentoring 시스템 등을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나갈 것임.
- 또한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그 피해자의 고통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화 관계회복 할 수 있도록 보호해나갈 것임

부 록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7212호) 행정자치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②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청소년 매매 행위)

-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초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에 처한다.

제12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 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13조 (소년부 송치)

-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3.22>
- ②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③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처분)

-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

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제17조 (상담시설)

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 (비밀누설금지)

- 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 (범죄방지 제도)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제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6261호,2000.2.3>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청소년보호법) <제6479호,2001.5.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당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당소”로 한다.

⑥ 생략

부칙(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196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 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법률 제 호

靑少年의性保護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靑少年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靑少年을 보호·구제하여”를 “靑少年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靑少年을 보호·구제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靑少年을 대상으로 하거나靑少年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호의 가목과 나목의 “靑少年과의”를 삭제하며, 동호에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위행위

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靑少年이용음란물이라 함은靑少年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조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靑少年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靑少年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정비와靑少年의 보호, 선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을 “靑少年의 성적 착취·학대 행

위의 처벌”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의 2 및 1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2 (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와 제12조의 죄(미수범), 형법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당해 청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로,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법 제3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제10조 3 (수강명령) 법원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청소년의 보호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상청소년의 처리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친족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년부 송치)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송치된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친족 등 보호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상담을 이수하게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보호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 제10조의2의 가해 청소년과 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된 해당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 외에 본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에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성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7조 각호의 1에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소년성보호센터의 업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사실의 접수·상담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
2.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관한 지원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담 등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4. 대상 청소년과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및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대상청소년과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병원 또는 관련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6. 성폭력가해 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8. 기타 청소년성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8조제3항중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여 제24조 앞에 삽입하고, 제20조 앞에 “제4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삽입한다.

제20조제2항제7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 2, 제30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권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세부정보의 공개)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로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동 대상자의 신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공되는 세부정보는 각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사진
5. 범죄사실의 요지

③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세부정보 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2항 각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열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 자료의 등사나 복사 및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세부정보공개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간 제공된다.

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세부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연 2회 지방경찰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등록정보가 바뀌는 경우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3호를 제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정보의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정보의 악용금지) 누구도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1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①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4.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중인 자 내지 취업하려고 하는 자의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이 규정하는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해임요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①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청소년대상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련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u> 청소년을 보호하며 <u>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u>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u> 청소년을 보호하며 ----- ----- ----- ----- -----.</p>	<p>법률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p>
<p><신설></p>	<p>제4조의 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u>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 정비와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u></p>	<p>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사회의 책임 명기</p>
<p>제2장 <u>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u></p> <p>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생략) ② <u>영리를 목적으로</u>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④ (생략)</p>	<p>제2장 <u>청소년의 성적 착취·학대 행위의 처벌</u></p> <p>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삭제 : 영리를 목적으로> ③~④ (현행과 같음)</p>	<p>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p>
<p>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⑤ (생략) <신설></p>	<p>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는 <u>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p>	<p>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여 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p>
<p><신설></p>	<p>제10조의2 (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u>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와 제12조의 죄(미수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당해 청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u></p>	<p>소년법상의 촉범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하여 단순 훈방하지 않고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신설></p>	<p>② 소년부 판사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로,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법 제3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동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소년법상 16세 이상에만 가능한 수감명령을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도 명할 수 있도록 함.</p>
<p><신설></p>	<p>제10조의3(수감명령) 법원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감명령을 할 수 있다.</p>	<p>성범죄 형 확정 판결 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수감명령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p>
<p>제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p> <p>제13조(소년부 송치)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의 예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3장 청소년의 보호 등</p> <p>제13조(대상청소년의 처리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③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친족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p> <p>④ <현행 ③항과 같음></p>	<p>제5조의 죄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을 명문화 함.</p> <p>제6조 내지 제9조의 대상청소년은 피해자이므로 불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p> <p>제5조 내지 제9조의 대상청소년은 선도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p>
<p>제14조(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p>	<p>제14조(소년부 송치)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송치된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친족 등 보호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p>검찰단계에서도 소년부송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안으로 교육, 상담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함</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신 설></p>	<p>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상담을 이수하게 한다.</p>	
<p>제15조 (보호처분)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5조 (보호처분)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제10조의2의 가해 청소년과 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된 해당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 외에 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에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p>제16조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성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7조 각호의 1에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 성보호 업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성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함</p>
<p>제17조 (상담시설) ①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p>제17조(청소년성보호센터의 업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사실의 접수·상담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 	<p>기존의 시설들이 분산되어 수행해오던 업무나 그동안 집행되지 못했던 업무들을 청소년성보호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p> <p>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p> <p>②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p> <p>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p> <p>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p> <p>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p> <p>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p> <p>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p> <p>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p> <p>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2.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관한 지원</p> <p>3.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담 등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p> <p>4. 대상 청소년과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및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p> <p>5. 대상청소년과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병원 또는 관련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p> <p>6. 성폭력가해 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p> <p>7.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p> <p>8. 기타 청소년성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p>	
<p>제18조 (비밀누설금지)</p> <p>①~② (생략)</p> <p>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⑥ (생략)</p>	<p>제18조 (비밀누설금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 및 제17조></p> <p>④~⑥ (현행과 같음)</p>	<p>1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 <p>제20조(범죄방지 제도) ① (생 략) ② (생 략) 1~6. (생 략)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p> <p>③ (생 략) ④ (생 략) <신 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 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청소년대상성범죄의 예방</u></p> <p>제20조(범죄방지 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8.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u>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 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권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세부정보공개 추가에 따른 장 제목 변경</p> <p>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함.</p> <p>형법상의 강간치상, 치사 범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의제강간의 경우가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추가</p> <p>현재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법령에 명문화하고자 함</p> <p>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p>
<p><신 설></p>	<p>제20조의 2 (세부정보의 공개) ① <u>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로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동 대상자의 신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의해 제공되는 세부정보는 각호와 같다.</u>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사진 5. 범죄사실의 요지</p>	<p>청소년 대상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범 이상의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p> <p>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③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세부정보 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2항 각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p> <p>④정보의 열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 자료의 등사나 복사 및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p> <p>⑤세부정보공개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간 제공된다.</p> <p>⑥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세부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연 2회 지방경찰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등록정보가 바뀌는 경우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⑦제1항의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3호를 제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⑧정보의 등록, 제공, 열람, 자료의 관리, 송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0조의3(정보의 악용금지) 누구도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정보의 악용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신설></p>	<p>제21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①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4.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p>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중인 자 내지 취업하려고 하는 자의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이 규정하는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함</p>
<p><신설></p>	<p>제22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성범죄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해당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신설></p>	<p>제23조(해임요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p> <p>① <u>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p>제5장 보칙</p> <p><신설></p> <p>제21조 (생략)</p>	<p>제5장 보칙</p> <p>제24조 (청소년대상성범죄의 신고의무)</p> <p>① <u>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련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1. <u>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u></p> <p>2. <u>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u></p> <p>3. <u>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u></p> <p>③ <u>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u></p> <p>제2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p>	<p>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p>